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ver.2



어린이집

---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ver.2  
CHILDCARE FACILITY

---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친화적 관점에서  
서울시 어린이집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항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및 응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삽입된 그림과 사진은 해당 가이드라인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을  
새롭게 계획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보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별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계획이 더해져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품격 높은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ver.2



어린이집

---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ver.2  
CHILDCARE FACILITY

---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의 의의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감성에 맞는 디자인 적용으로 배려하는 '디자인 복지'를 향한 첫걸음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공공환경과 건축물 등의 생활환경을 이용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고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기능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 패러다임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각기 다른 행태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나이, 신체 크기, 국적, 장애,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즉 쉽게 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다양한 복지현장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초 개발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복지공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상승과 법규의 개정 등 변화를 수용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용이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 고도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본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2는 복지시설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의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건축설계 및 시공 담당자와 복지시설 관계자, 시설 이용자 간의 환경디자인과 서비스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서울시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이용자(EACH)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모두(ALL)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이용자 친화의 복지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지원성, 안전성, 인지성, 건강성, 지속가능성'의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원리를 적용하여 복지시설의 수준 향상
-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로 활용
- 이용자 친화형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수행에서 디자인 원칙을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서울의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교육자료로 활용
-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



01 시설 이해하기	12
1.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2
1.2. 어린이집	13
02 이용자 이해하기	15
2.1. 아동 특성	15
2.2. 보육교사 특성	17
03 기본방향	18

## 1. 공간디자인

<b>01 출입공간</b>	<b>34</b>
1.1. 건물외관	34
1.2. 보행접근로	36
1.3. 주차공간	39
1.4. 주출입구	42
1.5. 현관	47
<b>02 보육공간</b>	<b>50</b>
2.1. 보육실	50
2.2. 유희실	58
2.3. 놀이터	60
2.4. 식사실	64
<b>03 관리 및 서비스공간</b>	<b>66</b>
3.1. 교사실	66
3.2. 기타 사무공간	68
3.3. 조리실	70
3.4. 세탁실	73
<b>04 이동공간</b>	<b>74</b>
4.1. 복도	74
4.2. 계단	77
<b>05 위생공간</b>	<b>80</b>
5.1. 화장실	80

## 2. 인테리어디자인

01 마감재	86
1.1. 외부 마감	86
1.2. 내부 마감	88
02 문과 창	92
2.1. 문	92
2.2. 창	86
03 색채	97
04 조명	99
4.1. 조명계획	99
4.2. 세부공간별 조명계획	101
05 안내사인	103
06 가구	104

01 공간별 법적기준 비교 108

1.1. 입지 및 규모	108
1.2. 매개시설	109
1.3. 이동시설	113
1.4. 활동공간	120
1.5. 위생시설	123
1.6. 내부 마감	129
1.7. 안전 및 대피시설	131

02 체크리스트 134



# | 기획 | planning

- 01 시설 이해하기
- 02 이용자 이해하기
- 03 기본방향

# 01 시설 이해하기

## 1.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소관부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	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보건 복지부
	복합노인 복지시설	농어촌 지역에 한해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 · 청소년	아동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보건 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 가족부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보건 복지부
기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 지원법	여성 가족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신보건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 복지부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 1.2. 어린이집

### (1) 어린이집의 정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공간으로, 보호 이상의 기본적 요소와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언어 발달 특성이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동은 출생 후 급속하게 발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린이집은 아동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유형 및 규모

어린이집은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유형]

구분		정의	규모
설립 주체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앞면 계속 )

구분		정의	규모
설립 주체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 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 집(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 <sup>1)</sup> 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2021.01.15.)

### (3)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영유아보육법(2020년 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		설치기준
입지조건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
일반	보육실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 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설치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 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
	조리실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 설치
	목욕실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
	화장실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
	교사실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 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
	놀이터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
장애아 전문	보육실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 포함)은 장애아 1명당 6.6㎡ 이상의 면적 확보
	집단활동실 등	「장애아·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이외에 아동을 위한 설비 계획 필요

\* 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재구성하였음

1) 조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02 이용자 이해하기

어린이집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 특성의 이해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하고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육환경으로 디자인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면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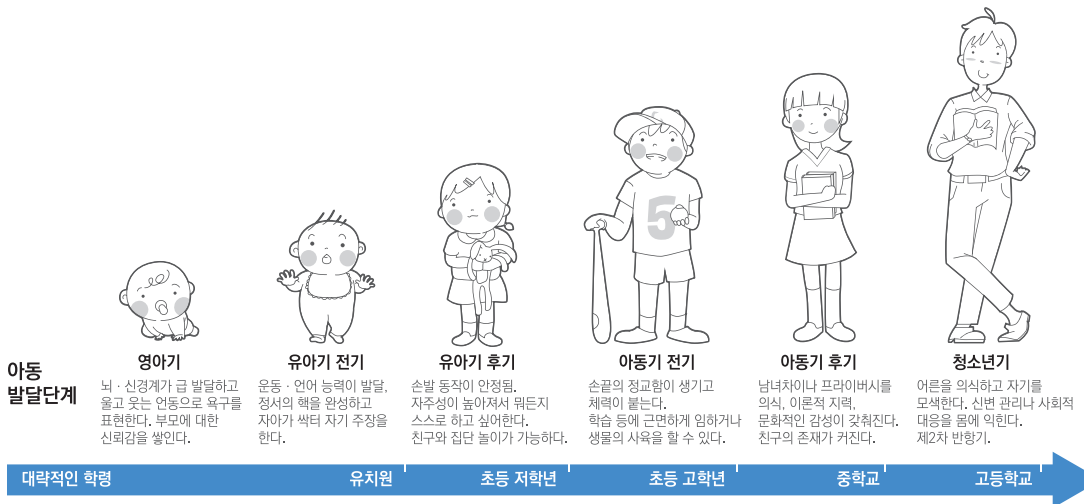
### 2.1. 아동 특성

아동의 발달 영역은 일반적으로 운동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발달은 아동의 대근육 활동뿐만 아니라 소근육 활동에 관한 것이며, 인지발달은 지적인 학습과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다. 사회·정서발달은 아동이 다른 아동 및 성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규칙과 능력을 경험해 나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특히, 아동의 발달은 출생 후 처음 3년간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므로 월령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 차이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아동이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발달학적 측면을 배려하여 아동의 적극적 놀이, 긍정적 상호작용에 의한 발달, 지속적인 성장 등을 자극하는 환경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 중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아동에게 어린이집은 학교와 같은 시설이 아닌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편안하고 친숙한 집과 같은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아동 발달영역별 주요 특성]

발달영역	주요 특성
감각운동발달	대근육 운동능력의 자극과 발달 소근육의 통제력 발달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 감각 지각 발달
정서발달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며, 정서조절 기능 발달 자아개념과 자긍심 및 자존감 발달 정서적 자기표현 발달 안전 및 안정감 발달
사회성발달	도덕적 규약 및 자기통제력 발달 의사전달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언어전달 능력의 발달 대인관계의 원만성 발달 사회작용 및 의사소통의 기회 제공 성인 역할 동일시를 포함하는 개인의 정체성 발달
인지발달	상징적 표현능력 발달 집중시간 및 집중력 발달 논리적 사고 및 사물의 연결 능력 발달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발달

[아동의 놀이활동 유형]

놀이활동	주요 특성
활동적 놀이	신체발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놀이이다. 아동은 공간 내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신체 부분들이 협응 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며, 방향감각을 발전시키게 된다. 또한, 움직이는 것은 즐거움의 원천이며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아동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며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움직임에 도전하려고 한다.
공상놀이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역할을 시도해 보고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준다. 공상과 모방은 실제로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창출해 내는 방법이다. 모든 종류의 소도구와 교구는 종종 공상을 자극하는 원천이 된다.
쌓기놀이	아동이 레고, 블록 등과 같은 교구를 사용하여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놀이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구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느끼고, 시험해보고, 이동시킴으로써 아동은 그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감각운동놀이	아동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봄으로써 예를 들어 이야기나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모래나 물을 갖고 놀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창조적 놀이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찰흙으로 반죽하기, 만들기 놀이는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하다. 이 놀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생각, 공상, 느낌을 표현하도록 고무시킨다.

## 2.2. 보육교사 특성

다양한 발달 특성을 가진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받는 신체적, 정서적 부담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어린 이집은 보육교사가 지치지 않고 신체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아동을 돌볼 수 있고 계속 머물고 싶도록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신체적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 및 공간을 계획하고, 보육교사에게 편리한 작업 공간 스케일을 제공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해야 아동을 더 섬세하고 따뜻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



보육교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돌봄과 놀이,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아동 연령별 보육교사의 역할]

0~18개월	18~36개월	3~5세
기저귀 갈기 잠자기 침구 준비·정리하기 조리·식사 준비 수유 분유 조제 영아 개인 수납 안아주기 업어주기 아기 마사지 자료 정리 (보육실) 청소 부모 확인란 및 게시판 등	기저귀 갈기 대소변 보기 잠자기 침구 준비·정리하기 조리·식사 준비 먹이기 아동 개인 수납 안아주기 업어주기 마사지 자료 정리 (보육실) 청소 부모 확인란 및 게시판 등	대소변 보기 낮잠 자기 침구 준비·정리하기 조리·식사 준비 안아주기 (보육실) 청소 자료 정리 부모 확인란 및 게시판 등

## 03 기본방향

### 디자인 목표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안락한 보육환경의  
서울형 어린이집

### 디자인 기본방향

#### (1) 심리적으로 안락함을 주는 친숙한 보육환경

- 아동이 집처럼 안식처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친숙하고 따뜻함을 주는 분위기로 디자인한다.

#### (2) 소규모 보육단위로 공간의 연결과 분리

- 아동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보육단위로 구성한다.
- 소규모 보육단위의 중심부에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 (3)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

- 인지발달의 기초인 움직임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다양한 감각적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장소를 조성한다.

#### (4)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 아동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아동의 기분, 상황,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계획한다.

#### (5)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 일상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6) 옥외공간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실내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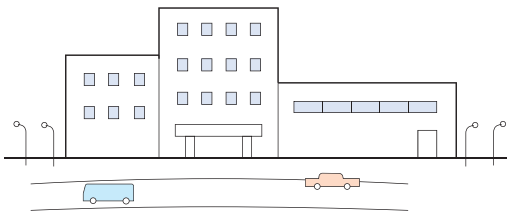
- 정원, 중정, 온실, 실외놀이터 등 다양한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 (1) 심리적으로 안락함을 주는 친숙한 보육환경

아동은 집에서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며 놀이와 휴식을 선택하는 일상을 통해 신뢰감과 자율성 등 삶의 기초가 되는 특성들이 균형 있게 발달한다.

### 아동이 집처럼 안식처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와 같은 시설적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생활의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집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건물 외관 및 실내공간은 아동을 압도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아동의 키와 눈높이, 손 크기, 팔 길이, 앉은키 등 신체치수와 체격에 적합하도록 가구, 문, 창, 계단, 위생기구 등을 세심하게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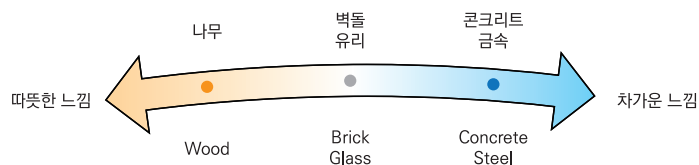
[지양] 학교와 같은 시설적 규모와 외관



[권장] 집과 같은 규모와 외관

### 친숙하고 따뜻함을 주는 분위기로 디자인한다.

- 외관부터 실내까지 시설적인 이미지를 주는 차갑고 딱딱한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며, 집처럼 따뜻하고 자연적인 소재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소재를 많이 활용한다.
- 목재, 패브릭 등 따뜻한 느낌의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콘크리트, 타일,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소재는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 길고 단조로운 복도, 차가운 타일바닥, 동일한 책상과 의자, 눈부신 형광등 등은 지양한다. 의미 없는 많은 그림과 장식, 무질서한 마감재, 과도한 색채, 재질의 혼재 등은 아동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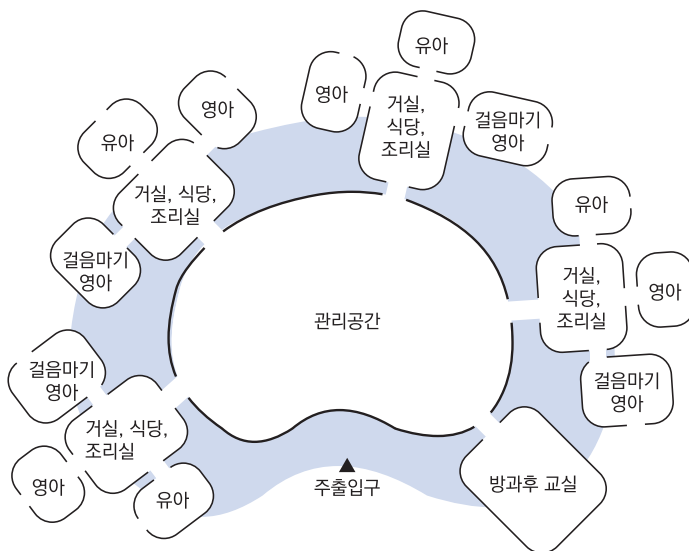
## (2) 소규모 보육단위로 공간의 연결과 분리

규모가 클수록 아동은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 기쁨, 행복, 호기심 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며 공격행동, 비사회화, 소속감 부재 등의 발달상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소규모 보육단위는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밀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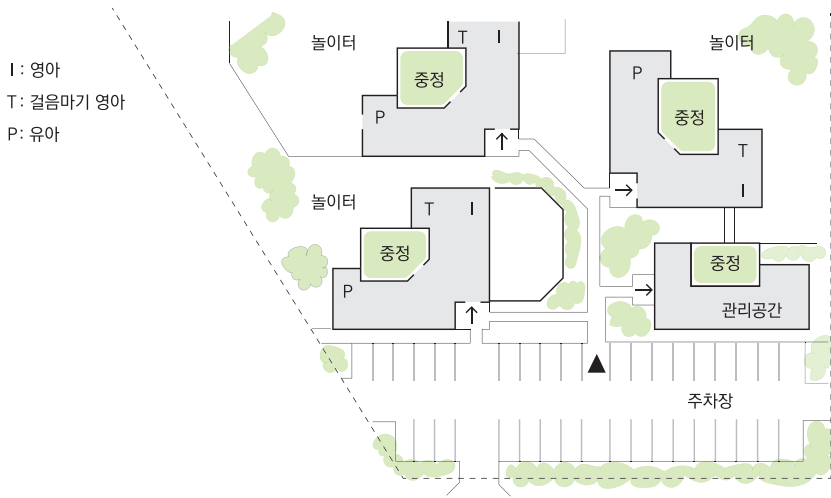
### 아동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보육단위로 구성한다.

- 주택에서의 생활과 유사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자연스러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소규모 보육단위로 계획한다.
- 소규모 보육단위의 중간에는 공용공간을 두고 그 주위에 보육실을 배치한다.
- 소규모 보육단위는 집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실, 식당, 간이부엌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보육실(영아반, 유아반 등)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 여러 연령의 보육실을 하나로 묶어 인접하게 배치할 경우 연령이 다른 아동 간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사회적, 정서적, 발달적으로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된다.
- 어린이집의 규모가 클 경우 2개~4개의 보육실과 공용공간을 인접 배치하여 소규모의 보육 단위로 모듈화하고, 모듈에 따라 건물을 여러 개의 작은 건물로 나누거나(캠퍼스 플랜) 하나의 건물로 할 경우 이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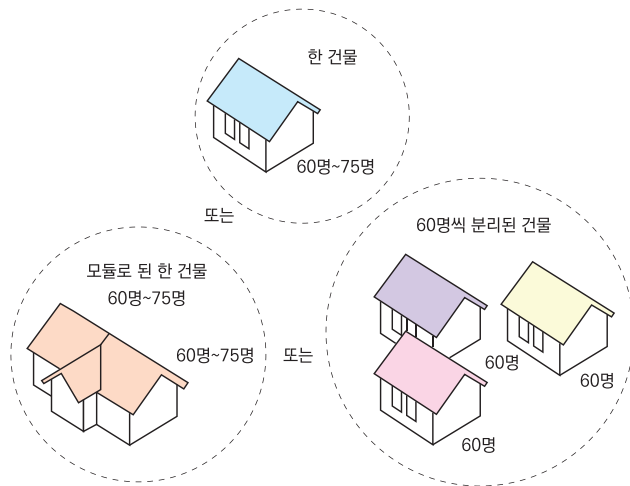
[ 소규모 보육단위 구성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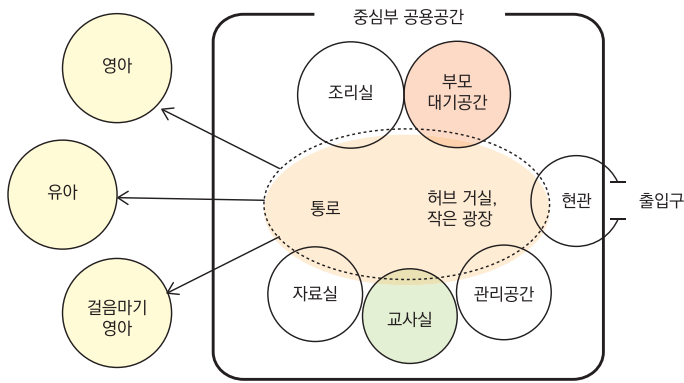
여러 개의 작은 건물로 나누고 실외놀이터를 각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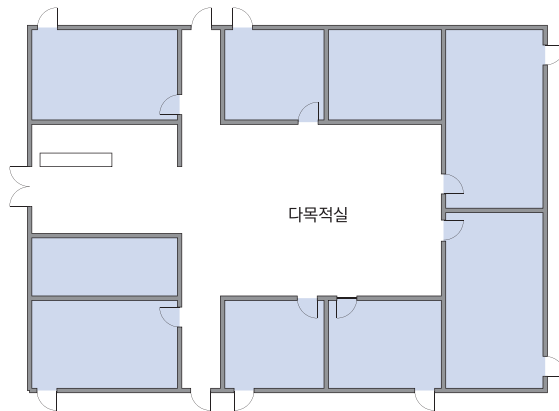
대규모 어린이집을 소규모 보육단위로 모듈화하여 여러 형태로 조합함

**소규모 보육단위의 중심부에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공용공간으로 구성한다.**

- 어린이집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 활동에 따라 적절한 공용공간을 정하여 모든 실들과 연결되도록 하고 모두 즐겁게 모이는 장소로 조성한다.
-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식사구역, 조리실, 거실로 구성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조리실과 거실 또는 거실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공용공간을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목적실을 건물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은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게 되고, 다목적실의 소음이 보육실 활동을 방해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권장]  
아동과 교사, 부모 등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중심부에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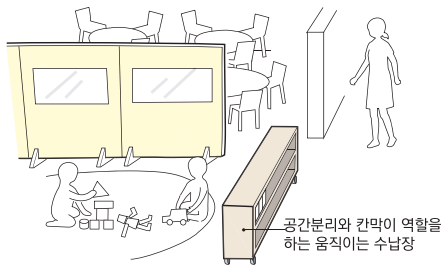
[지양]  
다목적실이 다른 실에 둘러싸여 프로그램 진행시 다른 실에 소음이 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3)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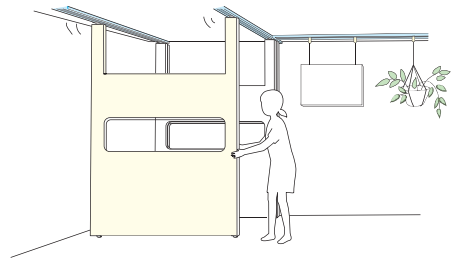
아동은 끊임없이 주변의 장소와 감각에 반응하고 기억하며 아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아동은 그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 신체의 성장뿐 아니라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 자아발달 등 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한다.

#### 인지발달의 기초인 움직임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이동방법, 신체와 사물의 조절능력 등 아동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유발하는 환경으로 계획한다.
-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설비를 두고 쉽게 옮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두어 아동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위치를 정하고, 다양한 영역에 접근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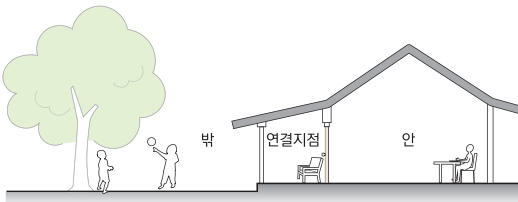
높고 낮은 고정된 벽이나 이동식 벽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공간의 위치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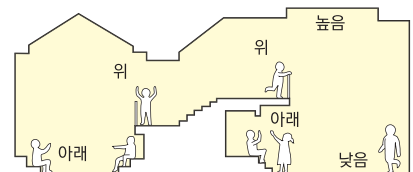
벽면·천장 등의 갤러리 와이어, 레일은 교사와 아동의 요구에 따라 공간을 변경함

#### 다양한 감각적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장소를 조성한다.

- 아동의 흥미와 활동을 유도하도록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되 자극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공한다.
- 공간의 성격에 따라 '안과 밖', '위와 아래', '밝음과 어둠', '거침과 부드러움' 등의 대비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동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공간의 확장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함



놀이집, 계단 숨을 수 있는 공간, 플랫폼, 라이저, 로프트 등을 두어 공간의 변화를 줌

## (4)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아동은 성인보다 장소와 감각을 더 잘 기억하고 성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섬세한 것에 더 깊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주변의 섬세하고 미세한 속성에 대해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매력 있고 신비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 아동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아동연령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 스케일에 맞는 다양한 교구, 설비 등을 설치한다.
- 문손잡이, 수도꼭지, 세면대, 변기, 수납장이나 선반 등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및 기기류는 능력 및 신체치수에 적합한 형태와 위치에 설치한다.
- 공간의 이동과 연결, 프로그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양한 재료와 색의 마감재, 가구,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아동이 장소를 잘 기억하고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정보를 일관된 색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제공하되, 의미없는 그림이나 기호의 사용은 지양한다.
- 아동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도록 조직화된 수납과 전시공간, 작업대 등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간구성, 설비, 비품 등은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위치와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표시는 멀리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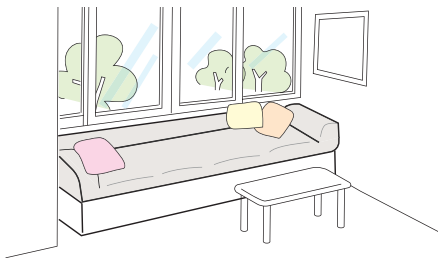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동 스케일에 맞는 가구, 작업대, 전시공간 등이 제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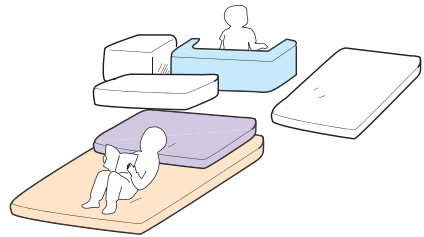
아동의 키 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보조대를 설치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아동의 기분, 상황,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 창문 아래 앉는 공간, 플랫폼, 낮은 경계, 알코브와 같은 작은 공간 등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공간을 제공한다.
- 개인공간은 교사가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으면서 아동의 사생활 노출과 소음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휴식을 취하는 개인영역뿐 아니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제공한다.
- 활동과 공간의 성격에 따라 공간 크기, 바닥과 천장 높이, 조명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되 전체적으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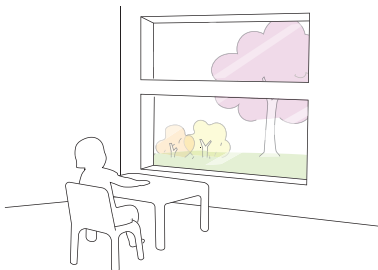
창문 아래 작고 아늑한 공간을 두어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개인공간을 제공하여 휴식 및 감정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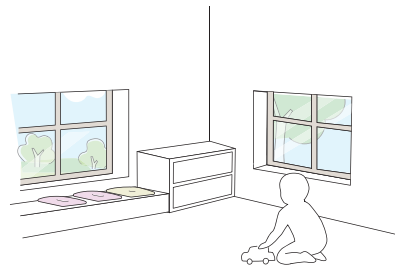
아동이 자유로운 자세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폭신한 쿠션, 매트로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음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계획한다.**

- 바닥높이 변화, 로프트 설치, 창문이나 유리로 된 낮은 벽, 조절 가능한 조명이나 가구, 다양한 재료와 색의 마감재, 알기 쉬운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아동이 장소를 잘 기억하고 방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상자 같은 방이나 많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 등 주변과 격리감을 주는 지나치게 폐쇄된 공간을 지양한다.
- 현재 위치나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창과 문을 설치한다.



보육실에 앉아서도 바깥의 날씨, 시간, 계절 등을 알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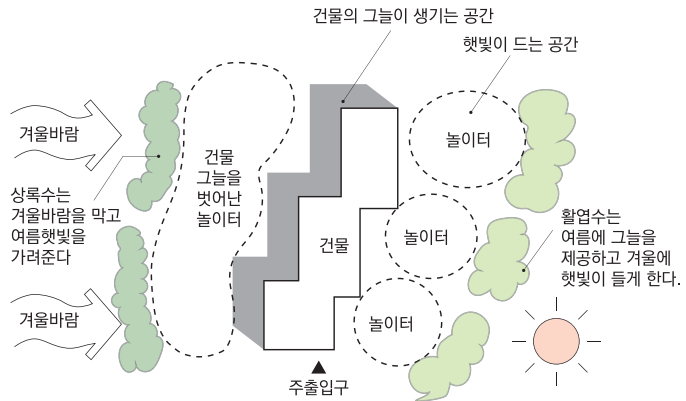
아동 눈높이에 설치된 작은 유리창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5)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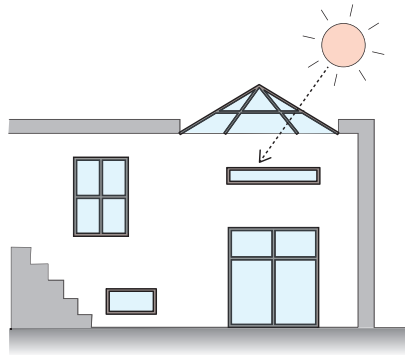
아동은 신체적, 지각적으로 미성숙상태이므로 성인에 비해 환경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거나 쉽게 이동하기 어려우며, 유독물질이나 오염물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어린이집 환경은 물리적으로 아동에게 안전해야 하되 아동발달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발달과 활동에 적합한 공기, 빛, 소리 등을 제공하여 아동과 교사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 대부분의 활동프로그램은 적절한 자연채광을 필요로 하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아동의 주된 활동공간을 배치한다.
- 활동프로그램의 특성 또는 활동 시간에 따라 눈부심이나 햇빛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접이식 차양 등과 같은 설비를 창 바깥에 설치한다.
- 자연채광이 잘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중정, 온실, 천창, 고창, 열리는 창문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햇빛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한다.
- 건물 주변으로 적절하게 식재하여 채광과 그림자, 소음, 바람 등의 실내 유입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채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계획하며, 인공조명은 자연광에 최대한 가까운 것으로 설치하고, 공간의 성격과 활동에 맞게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기를 통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열, 먼지, 유해가스 등 실내환경의 악화요인을 제거하고, 신선한 외기와 교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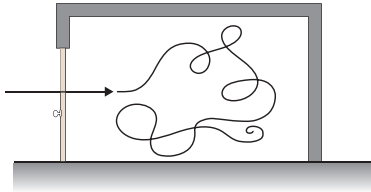


대지의 기후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건물의 방향 및 식재, 울타리, 보행로 등을 계획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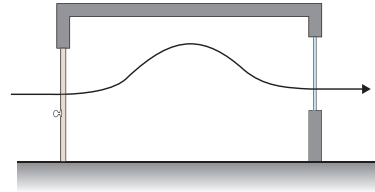


다양한 형태의 창을 설치하여 자연광을 최대한 유입시킴

- 약취 및 탈취를 위한 마감재를 선정하고, 특히 불쾌한 냄새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화장실, 기저귀갈이공간, 주방은 자연환기를 위해 외벽에 면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 소음의 발생원이 되는 공간, 설비 등에는 적절한 흡음 및 방음 성능을 갖춘 마감재 사용, 실 배치 등 유효한 대책을 마련한다.
- 아동의 연령, 활동량, 시간대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 조건이 다르므로 각 실마다 온도조절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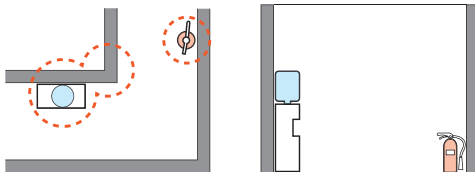
[지양] 창이 설치되지 않아 환기와 통풍이 어려움



[권장] 환기와 통풍이 용이하도록 출입구와 창을 설치함

**일상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원칙적으로 문턱이나 단차 제거, 문 손끼임 방지, 불필요한 돌출물 제거, 모따기한 모퉁이나 가구 사용 등의 일상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구나 기구, 소화기 등을 수납하는 공간을 확보한다.



[지양] - 하나씩 따로 돌출되게 놓여있어 통행을 방해하는 식수대 및 소화기  
- 직각으로 뾰족한 벽 모퉁이



[권장] -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매입식으로 설치, 또는 수납장과 통합설치된 식수대 및 소화기  
- 사선으로 모따기한 벽 모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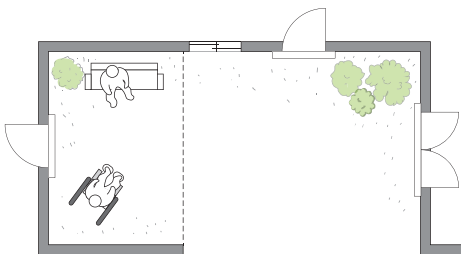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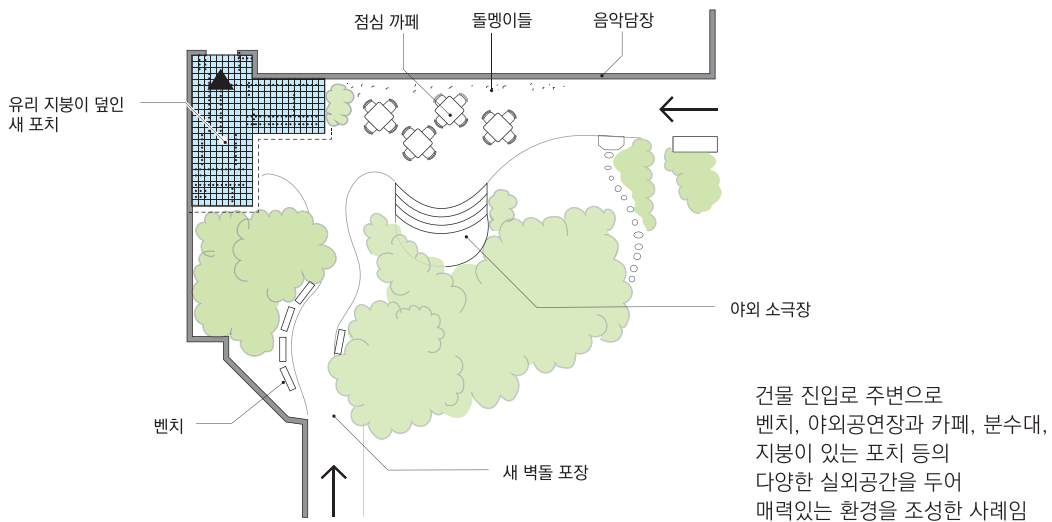
- 화재 발생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경로와 방화구역을 확보하며, 가급적 보육실 등 아동활동공간에 발코니 등을 설치하여 피난층까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다.
- 섬유제품의 커튼이나 침구류는 방염처리를 하며, 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설치한다.

## (6) 옥외공간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실내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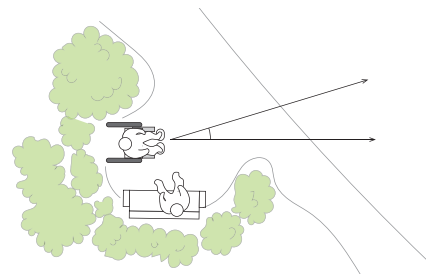
아동은 자연환경을 접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한다. 특히 긴 시간을 어린이집 실내에서 보내는 아동에게 실외의 자연과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연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기분전환을 위하여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원, 중정, 온실, 실외놀이터 등 다양한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 계절과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는 옥외공간을 조성한다.
- 다양한 옥외공간은 사회화와 프라이버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휴식과 신체활동 등의 친숙한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 옥외공간은 다른 공간 또는 영역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안전을 위한 적절한 울타리와 차양, 의자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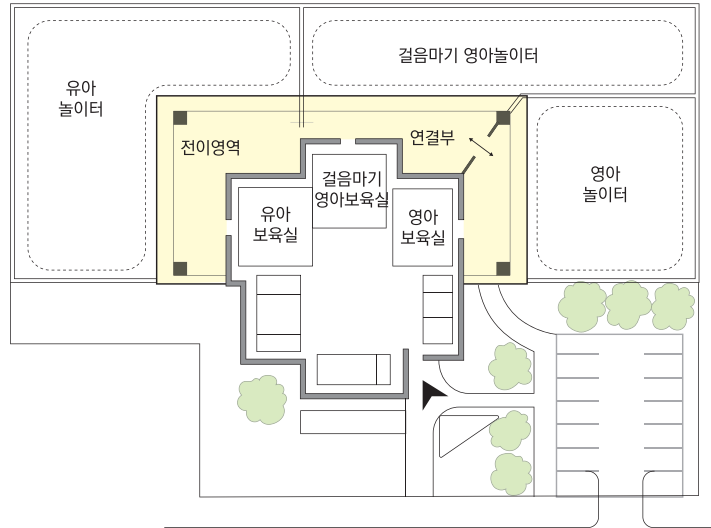
2개~3개의 공간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캐노피와 의자를 두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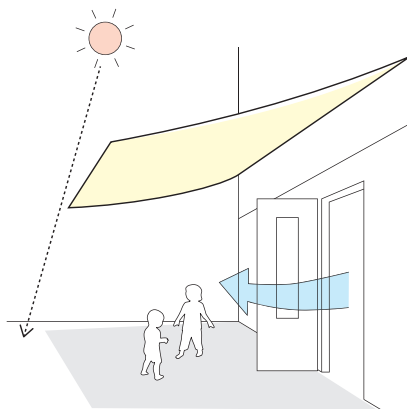
정원이나 실외놀이터에는 편안한 벤치가 있는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외공간을 제공함



- 자유롭게 실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와 실외를 연결한다.
- 실내에서 실외로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경사로, 문지방은 설치하지 않는다.
- 실내와 실외 사이에 포치, 데크, 테라스 등의 전이공간을 두고, 차양이나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어 햇빛이나 비 등의 날씨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 아동이 실내 활동영역에서 정원, 온실 등의 옥외공간을 볼 수 있도록 낮은 창을 설치한다.



각 보육실에서 직접 실외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과 지붕이 있는 포치로 된 전이영역을 두어 실내와 실외를 연결함



데크에 차양을 설치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시공 |

# Design·Construction

1. 공간디자인

2. 인테리어디자인



---

## 1. 공간디자인

01 출입공간

02 보육공간

03 관리 및 서비스공간

04 이동공간

05 위생공간

## 01 출입공간

### 1.1 건물외관

- 지역사회와 긍정적 관계를 가지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위치와 규모, 형태와 구조로 계획한다.
- 건축물 외관 마감은 자연친화성과 에너지 절감, 관리·보수·교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다.

#### 계획지침

- |                           |   |
|---------------------------|---|
| <b>건물배치<br/>(도로와의 관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경계에 담장이나 펜스 등 적절한 높이의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도로에서 외부인이 우연히 진입할 수 없도록 범죄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한다.</li> <li>• 사회화와 프라이버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 제공을 위해 자연요소와 야외 활동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li> </ul>   |
| <b>규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이용자(아동)와 종사자의 신체의 감각이나 움직임, 체격을 기준으로 한 인간 척도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li> <li>• 특히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하여 이용자를 압도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를 지양하고, 집과 같은 규모와 외관으로 계획한다.</li> </ul>  |
| <b>건축물 외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외관과 형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과 같은 디자인보다 지역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li> <li>• 건축물의 입구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재료와 색상 및 디자인으로 계획한다.</li> <li>• 일부 시설이 지역에 개방되는 경우, 지역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이미지를 더한다.</li> <li>• 어린이집이 위치한 대지 내외부에 식재와 시설물을 통해 장소감을 조성하도록 한다.</li> </ul> |

## 세부지침

### 재료와 색채

- 건축물의 외관과 마감은 심미성, 기능성, 자연친화성,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과 같은 느낌을 주는 마감재는 지양한다.
- 마감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공간에 사용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획일적인 입면 디자인보다는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한다.
-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 입면 색채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색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내구성 있고 관리·보수·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날씨 변화와 외관 청소로 인해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에도 낙상과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고 오염과 단열에 강한 마감재를 적용한다.



소규모 정원으로 대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출입동선을 유도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건축물 외관을 마감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

## 1.2. 보행접근로

-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너비의 진입공간을 확보한다.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
- 보도와 대지 경계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계 획지침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환영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물리적·심리적으로 밝고 안전한 보행접근로를 조성한다.
- 어린이집의 주출입구까지 보행자의 보행접근로와 자동차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연석이나 울타리, 바닥재의 질감·색채 차이를 이용하여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주출입구까지 평탄하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보행접근로

#### 유효폭

- 유아차와 아동을 안고 주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고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1.8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유효폭 1.2m 이상
- BF 최우수 : 전체구간 유효폭 1.8m 이상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폭의 보행로

#### 단차

- 대지의 경계와 대지 내 보행접근로와는 높이차가 없도록 한다. 계단이나 단차가 있을 경우 재료와 색채를 활용하여 인식하기 쉽도록 한다.
-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접근로는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단차 2cm 이하
- BF 최우수 : 단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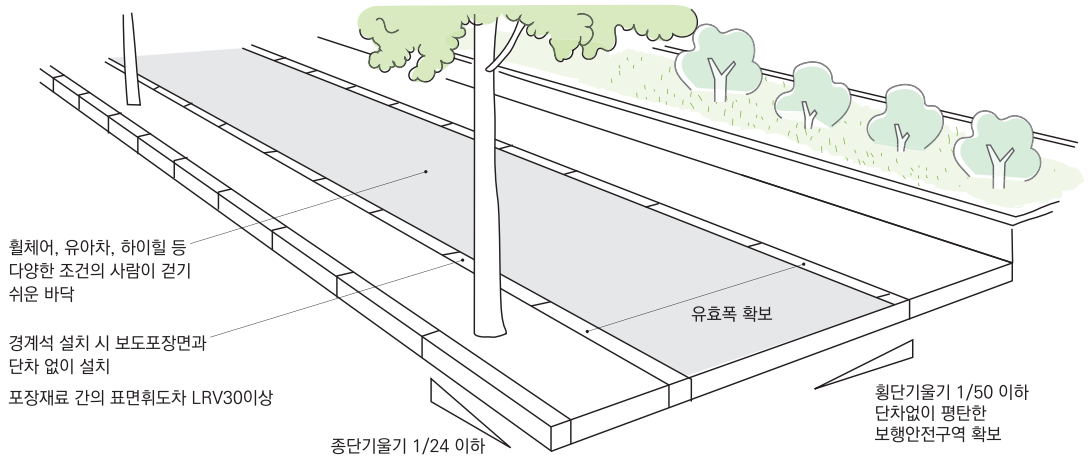


## 기울기

- 접근로 전체 구간 기울기는 1/24 이하로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1/18 이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 가능)
  - BF 최우수 : 1/24 이하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휴식공간으로 30m마다 길이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30m마다 1.5m×1.5m의 휴게참 설치

## 기타

- 주출입구로 이동하는 진입로는 꽃과 식물, 곡선의 길 등을 설치하여 특별하고 즐거운 곳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어 기억에 남는 흥미로운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 세부지침

### 유효높이

- 보행접근로에 보안등, 나무 등을 설치할 경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면에서 2.3m까지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으며, 나무는 가지치기를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지면에서 2.1m 높이 장애물 제거
  - BF 최우수 : 지면에서 2.1m 높이 장애물 제거

### 바닥마감

- 바닥면은 걸려 넘어지거나 눈과 비 등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줄눈은 0.5cm 미만으로 좁고 평탄하게 한다.

-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거나 노면이 불균형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
- 시야가 발달하지 않은 아동이나 시각장애인이 차도 또는 보행장애물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이나 색상을 달리하여 계획한다.

**손잡이**

- 부득이하게 보행진입로에 단차나 계단, 경사로가 설치될 때에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배수로 등 덮개**

- 배수로 덮개 등이 설치될 때에는 휠체어, 유아차, 수레, 킥보드의 바퀴나 구두굽, 지팡이 끝이 빠지지 않도록 틈새 간격은 2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배수구 등 덮개 틈새 간격 2cm 이하
  - BF 최우수 : 배수구 등 덮개 틈새 간격 2cm 이하
- 배수구나 공동구의 덮개 등은 가급적 보행접근로 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들뜸현상 등이 적은 큰 규격의 블록으로 이음새 없이 사용



대지경계선에 매립형 배수구를 설치하여 우천 시 대지 내 공간에서 보도로 빗물 침범 방지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얇은 높이로 설치된 배수로 덮개

**안전시설**

- 야간 이용과 안전을 고려하여 상시 조명 또는 센서 조명을 설치한다.
- 야간보안을 위해 출입공간 전면에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백색 또는 전구색의 확산조명을 설치한다.
- 진입로와 출입구에는 CCTV와 야간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안등을 설치하여 범죄 등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 1.3. 주차공간

- 아동, 부모, 방문자, 교사 등 종사자, 배달차량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 전송이 가능한 CCTV와 조명을 계획하여 범죄예방과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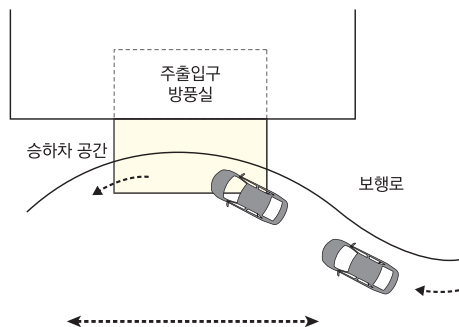
#### 계획지침

#####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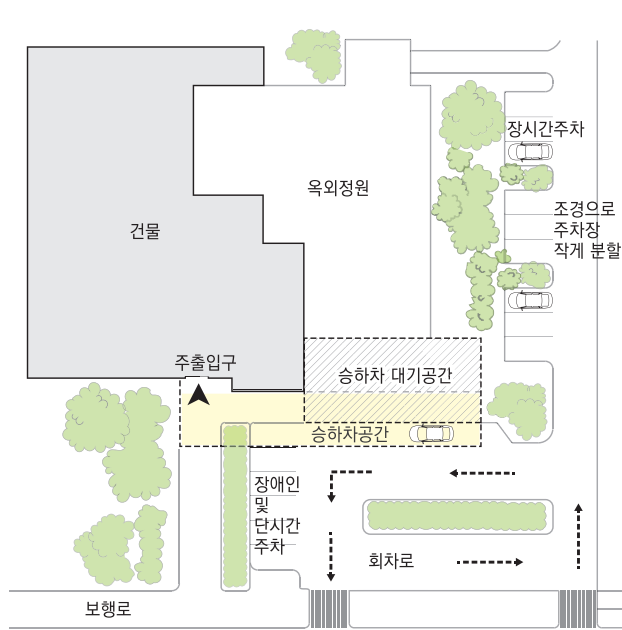
- 주차공간은 건물의 배면, 측면 등 아동의 활동공간과 이격된 위치에 조성한다.
- 주차장 출입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 이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차단하는 식재나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지양한다.
- 주차공간의 출입구 안내사인은 도로에서 쉽게 인지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차량의 출입과 이동에 있어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한다.

##### 설치방법

- 주차 진입로와 주차구획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방문자용, 직원용, 하역용, 응급상황 또는 승하차구역 등 주차공간을 소규모로 분할하여 등하원이 용이하도록 한다.
- 유아차나 아동을 안고 타고 내리기에 편리하도록 충분한 승하차 공간을 제공하고, 기상변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 등을 설치한다.
- 조리실로의 식자재 반입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실로 연결된 별도의 출입구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고 주출입구에서 승하차 공간까지 차양을 설치함



보행로에서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식재를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소규모로 분할한 사례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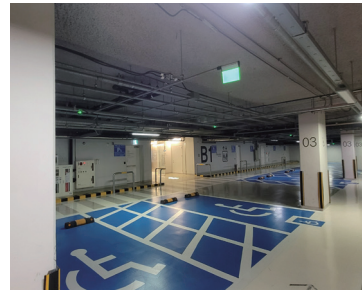
-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주차구역은 대지 내 차도를 통과하지 않고 건축물 주출입구나 엘리베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이에 설치한다.
- 건축물 출입구와의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에 인접하여 배치하거나, 대체 주차공간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주차장출입구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계획



건축물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구역 설치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크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하여 폭 3.5m, 길이 5m로 설치하고, 측면에 폭 1.2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노면에 표시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주차구역 크기 폭 3.3m, 길이 5m 이상, 바닥 기울기 1/50 이하
  - BF 최우수 : 주차구역 크기 폭 3.5m, 길이 5m

## 보행안전통로

-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과 배달차량의 정차장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붕이나 캐노피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은 모든 구간에 걸쳐 폭 1.8m 이상으로 하고, 차량 진입로 등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유효폭 1.2m 이상
  - BF 최우수 : 유효폭 1.8m 이상

## 세부지침

### 바닥마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과 보행안전통로는 경계부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안전통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바닥재의 색상과 질감을 달리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바닥재 변경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은 바닥재 색상만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 높이, 바닥 마감 등의 설치 기준은 접근로(37p)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 유도 및 표시

- 대지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인 유도표시를 설치한다.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고,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와 함께 바닥 색상 차별화로 식별성을 확보한다.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별도 주차구역을 마련할 경우에는 주차구역의 유도 및 안내표지판에 해당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따른다.

### 기타설비

- 지하주차장 또는 야간 이용 시에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길찾기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 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 주차장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의 Ⅲ. 공공건축물 02 접근공간 2.3 주차장(157p-163p)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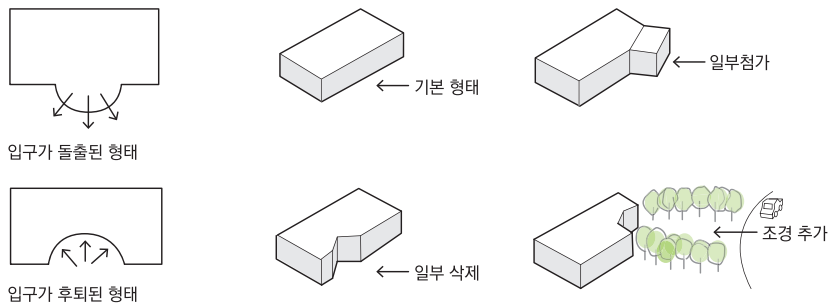
## 1.4. 주출입구

- 보행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안전한 승하차 공간과 주출입구가 연결되도록 한다.
- 주출입구는 친숙하고 환영받는 분위기가 되도록 재료, 색채, 조명, 가구를 계획한다.
- 주출입구는 접근로와 주차구역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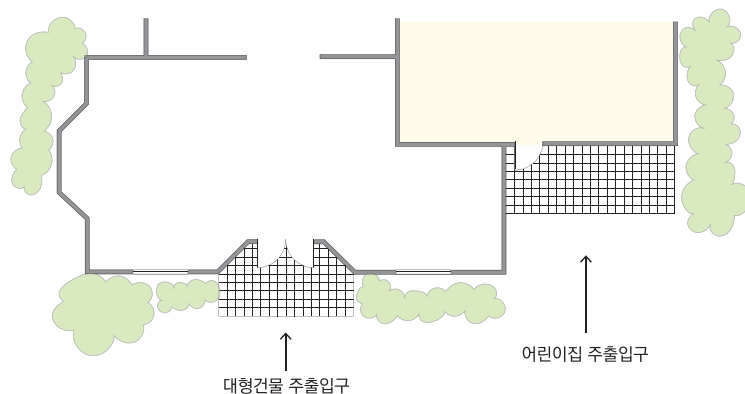
### 계획지침

#### 주출입구 전면

- 주출입구의 진입방향과 출입구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주출입구의 가시성을 높여 환영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고,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별도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건물 외관에서부터 분명히 구별이 되는 독립된 출입구를 두어서 출입동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시성과 유인성을 높이는 주출입구 형태의 예로, 주출입구를 잘 보이게 하여 환영받는 느낌을 제공함



다른시설과 통합되어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경우, 독립된 주출입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인성이 높은 색채의 담장과 대문



별도의 출입동선으로 분리된 출입구



우천을 피할 수 있는 캐노피형 주출입구

## 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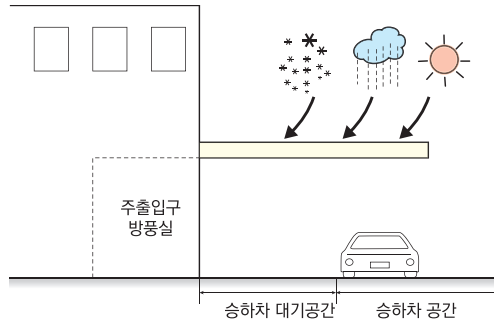
- 주출입구는 보행접근로에서 단차없이 평탄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 단차가 있을 경우 2cm 이하로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2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면 모깎기 또는 턱 낮추기를 하여 단차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 지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출입구 바닥면과 보행접근로 사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휠체어 등이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경사로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부출입구에 대한 안내 및 유도 표시를 한다.
- 부득이하게 계단이나 단차가 발생할 경우 끝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발 밑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효거리 및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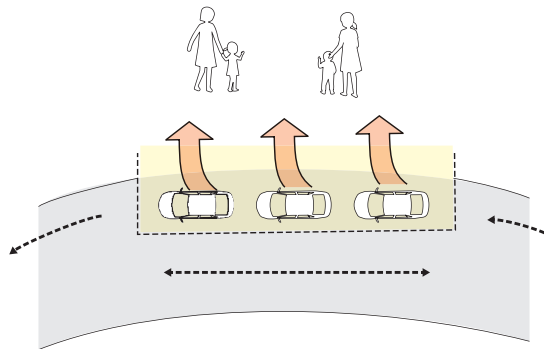
- 주출입구 정면은 혼잡해지는 등하원 시간을 대비하여 아동과 보호자, 유아차의 접근을 위한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 BF 최우수 : 전면 유효거리 1.8m 이상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기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대형 유아차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충분한 너비로 계획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통과 유효폭 0.9m 이상
  - BF 최우수 : 통과 유효폭 1.2m 이상

**승하차 공간**

- 아동이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앞 공간에 2대~4대의 차량이나 응급상황 시에 구급차 등이 임시로 주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확보한다.
- 승하차 공간이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승하차 공간 및 전이공간은 우천 시를 대비하여 출입구 전면부에 필로티, 캐노피, 차양 등을 설치한다.



승하차 공간상부에 필로티, 캐노피, 차양 등을 설치하여 비, 눈,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함



아동과 부모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와 인접하게 승하차 공간을 제공함

**대기공간**

- 보호자가 등하원 시간에 대기하거나 일상 상담을 위한 대기공간을 주출입구 주변에 별도로 마련한다.
- 외부 대기공간은 우천 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의자를 설치하여 휴게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다.

**기타 공간**

- 주출입구 전면에서 놀이터, 야외학습(텃밭 등), 정원, 산책 공간이 연결되도록 한다.
- 주출입구 전면에는 환경관리와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수도시설과 세면대를 설치한다.



## 세부지침

### 주출입구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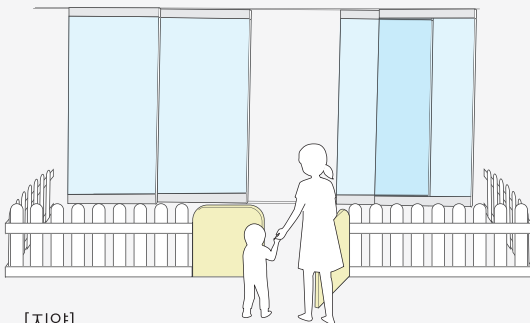
- 비나 눈, 흙을 털어낼 수 있는 발판 설치 시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 주출입구 전면에서 차도가 인접되어있는 경우 아동이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바닥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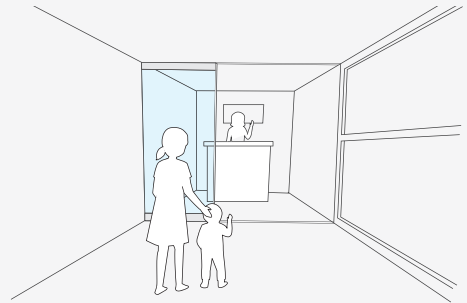
- 바닥면은 걸려 넘어지거나 눈과 비 등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출입문

- 주출입구로 접근하는 아동이 어린이집 내부의 활동공간이나 친숙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로 된 문을 설치하고, 아동의 키와 눈높이에 맞는 창을 설치한다.
- 주출입구 문의 크기와 무게는 아동이 혼자서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고, 자동문 설치를 권장한다.
-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자동문은 아동의 신장의 크기를 고려하여 감지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 미닫이문의 경우 바닥면의 레일이 돌출되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자연소재의 재질과 마감, 형태의 문으로 한다.
- 주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먼지제거 및 쾌적한 온열환경을 조성한다.



[지양]  
실내를 볼 수 없는 현관은 아동에게 두려움과 위축감을 줌



[권장]  
투명 유리문을 통해 실내의 친숙한 사람과 활동을 볼 수 있게 함

- 문 손잡이**
  - 문 손잡이는 근력이 약한 아동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사이에 위치하고,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 조명**
  - 주변이 어두울 때에도 아동과 보호자가 환영받는 분위기를 느끼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계획한다,
- 점자블록**
  -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설비**
  - 유아차와 킥보드, 휠체어 등을 보관하거나 잠시 둘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한다.
  - 출입문 인근에 잠시 앉아 기다리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인터폰 등**
  - 방문자와 보호자를 위해 눈에 잘 띄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폰 또는 초인종을 설치한다.
  -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 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 방문자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접근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유아차, 킥보드, 우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마련



방문자나 보호자 등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테이블 등을 두고 차량시설을 설치

## 1.5. 현관

- 다수의 아동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집과 같이 편안하고 아동을 위한 장소라는 느낌이 들도록 계획한다.

### 계획지침

#### 위치

- 교사실 및 관리공간에서 현관이 보이도록 하여 방문자의 출입을 알기 쉽게 한다.
- 어린이집 내 다른 활동공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규모와 형태

- 현관은 안전하고 외풍이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편리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아동 및 방문자 등 여러 명이 동시에 신발을 편하게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다.
- 보호자나 방문자 등이 잠시 앉아 기다리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따뜻한 색, 부드러운 조명, 카펫, 편안한 의자와 가구, 식물 등 집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설치하여 거실과 같은 분위기로 계획해야 한다.

#### 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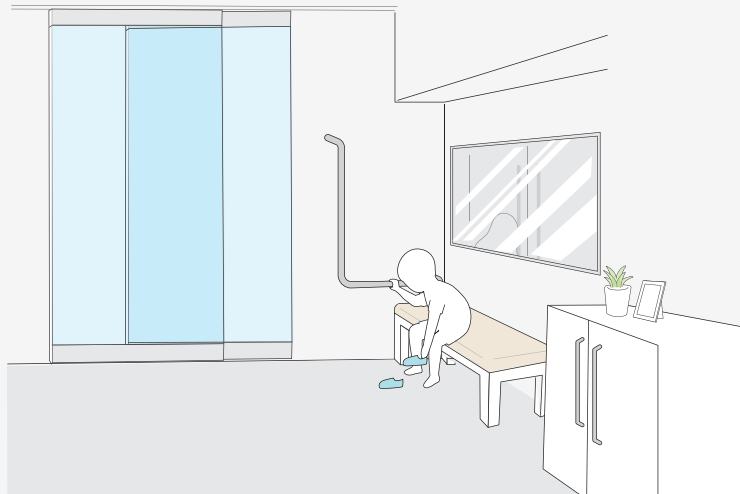
- 현관문의 문턱이나 재료분리대의 단차는 2c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단, 단차가 높을 때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약간의 단차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단차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끝단의 마감 처리를 다르게 한다.



신발 갈아 신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U자형으로 처리하여 공간활용과 편의성 향상

## 세부지침

- 현관문**
- 현관문은 외부 출입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고,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방법과 안전을 위하여 내외부 출입을 위한 잠금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에너지 효율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동문 형태의 중문을 설치할 수 있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 출입문에 손 끼임 및 충격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 마감재**
- 현관의 가구와 시설물은 친숙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마감 재료 및 질감, 색채와 함께 조명, 가구를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아동의 성취감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이동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영역에 작품을 전시한다.
- 가구 등**
-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낮은 벤치를 설치하고, 서서 신발을 신을 경우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한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낮은 벤치와 손잡이를 설치함



신발을 신고 벗기 편리하도록 벤치, 의자, 손잡이를 설치하고 위생을 위하여 세면대 설치

-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과 높이의 신발장을 설치하고, 신발장 앞 공간에는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루나 발판을 둔다. 영유아기의 아동을 위해 이동식 디딤대를 둘 경우 충분한 크기로 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로 계획한다.
- 신발장은 문을 설치하지 않고, 모서리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둥글게 마감하거나 코너비드(모서리 보호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현관 전면이나 잘 보이는 곳에 유아차, 자전거, 우산 등의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 어린이의 관심을 유발하여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난감, 수족관, 새장 등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한다.

**조명**

- 야간 이용뿐만 아니라 채광이 부족한 실내공간에서 주출입구와 현관 내 단차 등의 인지성을 높이고 방향 유도를 위한 안전등(조명)을 설치한다.
- 신발장 내부, 수납장 등 상시 어두운 공간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센서등을 설치하면 이동방향 유도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위생설비**

-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출입 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한다.

**보안설비**

- 현관에 보안제어장치가 있는 중문을 설치하여 아동과 방문자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중문의 보안제어장치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으면서 교사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02 보육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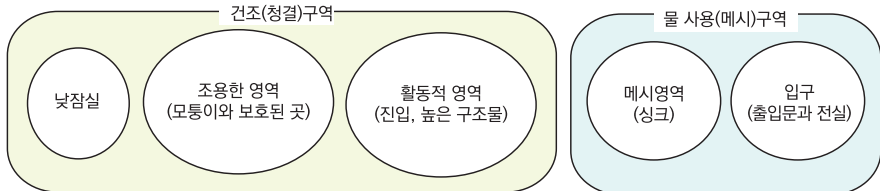
### 2.1. 보육실

- 아동 연령별 발달특성 및 신체크기를 고려하여 보육공간을 조성한다.
-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활동 특성별 영역의 고정성과 융통성을 결정한다.
- 교사가 어디서나 보육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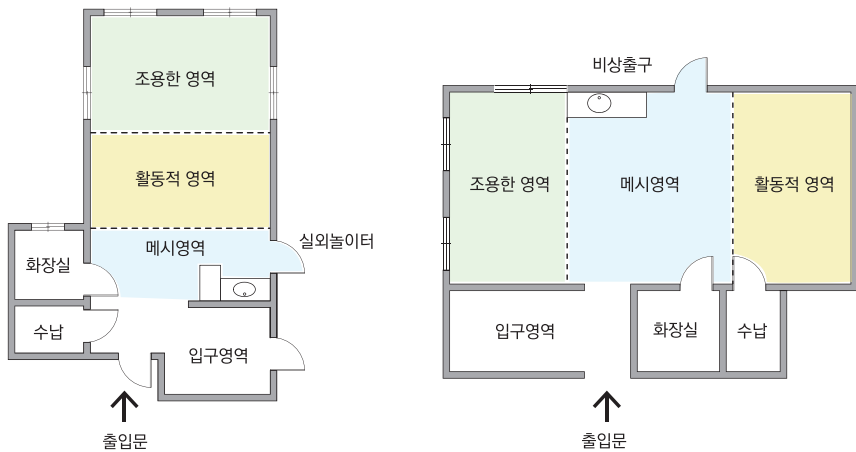
#### 계획지침

##### 기능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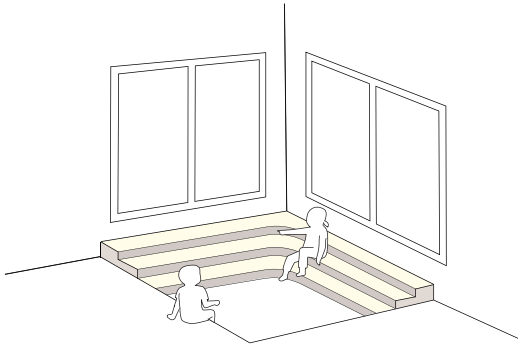
- 아동 스스로 할 수 있고, 교사가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한다.
- 아동과 교사가 다양한 형태로 앉을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영역을 구성하되 활동영역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고, 각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아가 형성되고 신체와 감각, 인지, 정서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다양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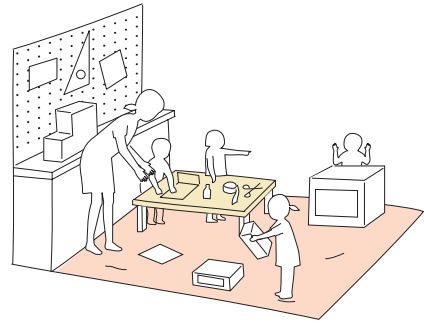
보육실의 활동영역을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보육 시행 시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2개의 보육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가변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 보육실 입구에 모든 아동의 개인사물함을 둘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보육실의 기능은 아동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보육실의 주된 활동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가구, 조명과 방음시설 등을 선택한다.



보육실 한쪽에서 설치된 낮은 계단형 단(라이저)은 친밀하고 안전한 활동영역을 제공함



교사 1명과 아동 4명 정도가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며 활동 성격에 적합한 바닥재, 가구 등을 설치함

### 규모

-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인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영유아보육법 : 최소 면적기준은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2.64㎡ (거실, 공동 놀이시설 포함)
    - 서울시\* : 최소 면적기준은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2.64㎡ 이상 확보 권장 (산정시 복도, 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제외)
-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서울시)

### 출입문

- 보육실 출입문에는 문턱이나 단차가 없도록 한다.
- 아동의 공간인지성 향상을 위해 보육실의 문마다 디자인을 적용한다.
- 실내 출입문은 가급적 미닫이문으로 계획하고, 출입문과 문틀 모서리는 뾰족하지 않도록 곡면 처리하며 손끼임 방지용 완충재, 경첩커버 보호대, 속도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 모든 출입문에는 아동 눈높이부터 성인 눈높이에서 복도 쪽을 볼 수 있는 조망창을 설치하되 아동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와 위치를 고려한다.
- 통유리 문은 부딪힘 사고예방을 위해 시야 높이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설비를 갖춰야 하고, 반드시 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 창문

- 보육실은 되도록 남쪽에 창문을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게 한다.
- 복도에 면하는 보육실 벽면에 창문을 설치하여 보육실 내부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와 교사의 눈높이에 맞춘 조망창이 설치된 문



미담이 문과 여담이 문의 이중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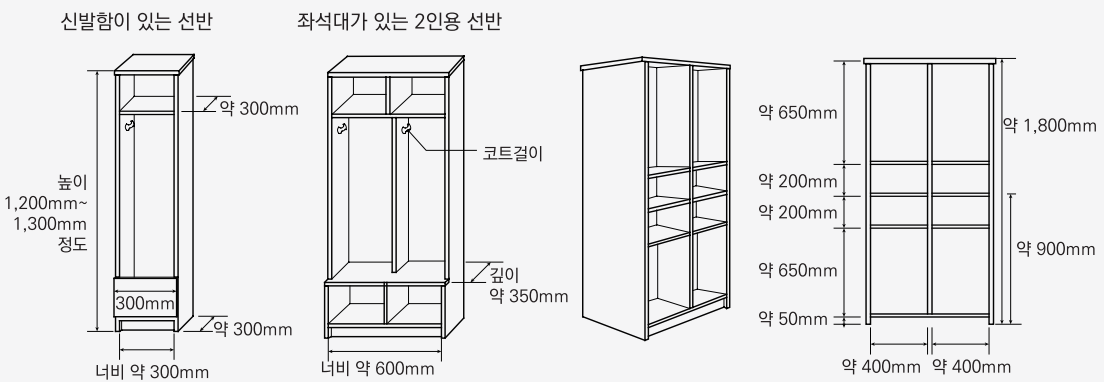


보육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호

## 세부지침

### 가구

- 아동 스스로 안전하게 놓고, 교구와 장난감을 사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 높이에 맞는 선반과 수납가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가변적 구조를 고려한다.
- 아동의 감각과 지각 발달을 돕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바닥재, 의자, 책상, 플랫폼, 가구 윗면 등을 제공한다.
- 책상과 의자가 너무 많은 경우 아동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므로 주의한다.
- 보육실 내에 교사를 위한 공간과 교사용 개인사물함 및 책상 등 가구를 제공하여 교사영역을 확보하고, 낮잠시간에 행정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부분 조명이나 스탠드를 설치한다.
- 낮잠을 위한 침구와 청소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보관장을 설치한다.



### 마감

- 보육실 벽면과 천장은 차음성과 흡음성이 우수한 마감재로 마감한다.
- 보육실 내 교사영역은 천장과 바닥에 영역표시, 마감재 변경 등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한다.



- 아동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하며, 활동적인 아동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고, 안전하며, 유지·관리 용이한 소재로 계획한다.
- 아동이 성장하면서 잡고, 기고, 서고, 걷는 등 움직임과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바닥과 벽에 카펫이나 매트(쿠션)와 같이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한다.
- 바닥의 마감에 약간의 파손으로도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표면이 벗겨지거나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조명**

- 보육실의 조명은 아동(평균 7세에 시각발달 완료)의 시각발달을 고려하여 간접광원을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명 덮개를 사용한다.
- 낮잠시간을 위해 적절한 조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도와 색온도가 조절되는 간접 조명 설치한다.
- 낮잠에 방해되지 않도록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자연광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타 설비**

-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도록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사용을 고려하여 하단에 콘센트가 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교사가 어디서나 보육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가구 배치



개인사물함 전면에 여러명의 아동이 동시에 사용해도 혼잡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

## [영아반]

- 위치**
- 영아기의 아동을 위한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하며, 기저귀 교환과 수유와 이유식 섭취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과 주방이 가까운 위치에 계획한다.
  - 영아반 보육실은 소음이 없는 공간에 우선 배치하며, 안전하면서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 공간구성**
- 영아반의 보육실은 기본 활동영역과 기저귀갈이, 수유·낮잠 등의 휴식·지원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를 분리하여 배치한다.
  - 만 12개월 미만 수유 및 이유기 영아로 아동 발육상태에 개별적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하되 모든 활동영역을 포함한다.
  - 감각운동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즐거운 소리, 식물, 변화하는 색과 그림자, 부드럽고 거친 질감 등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낮잠공간이 활동영역과 완전히 분리될 경우 가정의 침실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한다.
  - 교사와 영아가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되, 교사가 다른 아동을 보면서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한다.
  - 수유 및 급·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간이부엌을 두되, 가열 및 조리기구 등 위험요소들은 아동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마감재**
- 활동공간과 병용하는 낮잠공간은 놀이도구 및 가구 등을 이동해야 하므로 가구 및 바닥마감 선택에 유의한다.
  - 3세 미만의 아동은 촉각이 예민하므로 포근한 소파, 카펫, 베개, 쿠션, 벽걸이 등 다양한 질감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 가구  
(기저귀갈이대)**
- 기저귀와 낮잠용 침구 등 부피가 큰 비품들이 많으므로 보육실 면적을 넓게 하고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 기저귀 가는 공간은 기저귀를 가는 동안 아동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면적의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해야 하며, 기저귀 갈이대는 높이 400mm의 반좌식 또는 800mm의 입식 방식으로 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3면의 가장자리에 150mm 정도의 난간을 둔다.
  - 기저귀 가는 공간에는 교사가 능률적으로 기저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생용 쓰레기통과 냉온수가 공급되는 싱크대, 수납가구, 조명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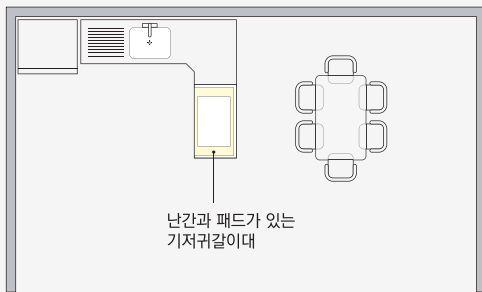
- 교사가 편안하게 앉아서 수유할 수 있는 소파, 의자를 두어야 하며,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동을 위하여 낮은 탁자와 의자를 제공한다

**보육실내 화장실**

- 배변훈련이 가능하도록 보육실에서 직접 출입을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
- 교사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칸막이 없이 또는 낮은 칸막이를 부분 설치한다.
- 기저귀 가는 공간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교사와 아동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한다.
- 화장실에 기저귀 가는 공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기저귀 가는 공간에서 보육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한다.

**채광 및 환기**

- 낮잠공간은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환기와 청소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보육실 관찰과 기저귀교환 등이 동시에 가능한 기저귀갈이공간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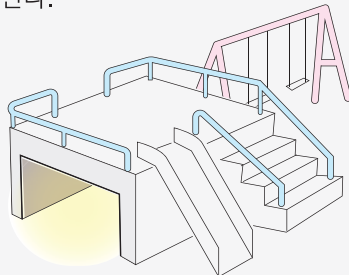
양쪽의 보육실에서 기저귀 가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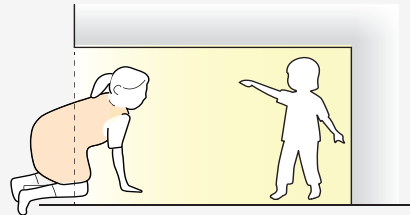
## [유아반]

### 공간구성

- 아동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활동 특성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되, 시각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활동 상황에 따라서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공간, 1:1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 소집단 공간, 대집단 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 휴식, 낮잠 등의 조용한 활동이나 작은 블록놀이 등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활동을 위한 영역은 다른 영역과 어느 정도 분리하여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 조용한 활동이나 놀이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은 보육실의 한적한 곳에 배치한다.
- 음률과 언어활동, 조형 미술, 과학활동, 극놀이 등 아동의 움직임이 많거나 서서 하는 활동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에 배치하고, 화장실, 싱크대, 콘센트 등의 설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활동영역에 있는 아동이 교사와 다른 아동을 쉽게 볼 수 있고, 교사는 어디서나 보육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영역 간의 경계 높이는 아동의 크기에 맞추며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
- 아동이 자신의 감정이나 활동에 대한 욕구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청각적·시각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공간을 제공한다.



대근육활동기구 아래쪽에 작은 공간(누크)은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개인공간이 됨



아동에게 맞는 작은 공간은 성인의 접근도 가능하도록 계획함



작은 알코브, 놀이집과 수납장의 아래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공간 조성

**마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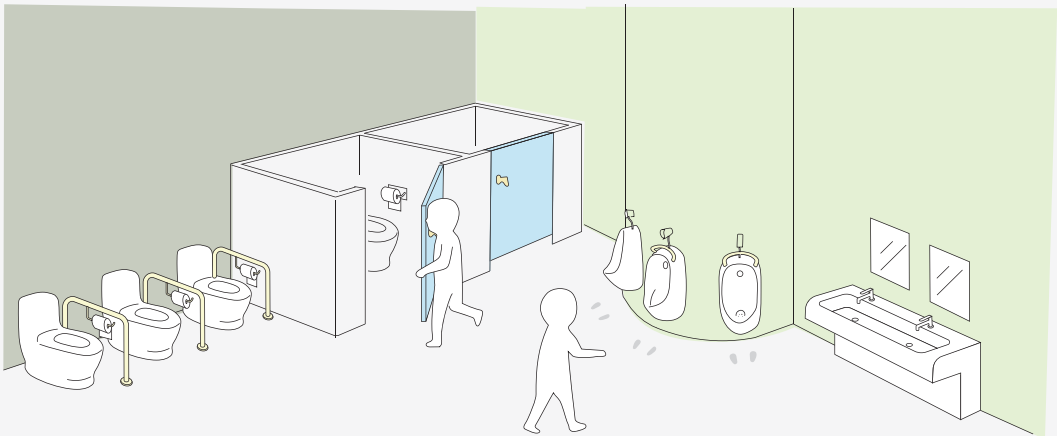
- 활동영역별로 영역의 시작과 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마감재, 색채 등을 달리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가구**

- 대부분의 교구, 교재, 장난감을 아동 스스로 꺼내고, 사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선반 등과 같은 개방된 수납공간으로 한다. 단, 아동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물품들은 문이 있는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친근감을 느끼며 즐겁게 급식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4명~6명의 아동이 소규모로 앉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배치한다.
- 활동의 특성에 따라 조용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활동영역은 낮은 분리대, 벽, 가구 등을 이용하여 고정된 경계를 설정하고, 움직임이 많거나 서서 하는 활동영역은 천장과 바닥 높이, 조명의 밝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 가능한 경계를 설정한다.

**보육실내 화장실**

- 화장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계획한다.
- 보육실과 연결된 화장실은 아동의 성장과 요구에 따라 칸막이 없는 변기, 낮은 칸막이 또는 문이 있는 변기 부스를 적절하게 계획한다.
- 화장실 내부에는 칫솔과 컵 보관대, 수건걸이, 거울 등을 설치한다.
- 아동의 연령에 따라 대변기, 부스 설치기준은 화장실 대변기 부스설치 Tip(81p)에 따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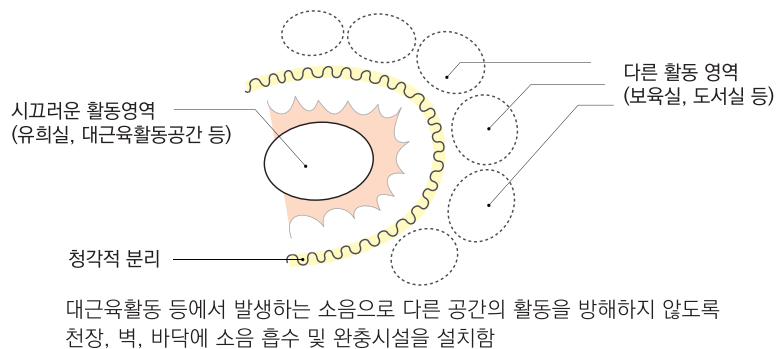


## 2.2. 유희실

-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 설명회, 발표회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 구조로 구성한다.

### 계획지침

- 위치**
- 유희실은 실외놀이터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두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을 함께 두거나 가까이 배치한다.
- 기능 및 배치**
- 어린 영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함께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대근육·소근육 사용과 신체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이나 놀이 등 연령에 맞는 활동영역을 제공한다.
  - 활동영역을 적절히 분리하고 쉽게 인지하고 복합감각의 발달을 위해 천장높이, 바닥높이, 마감재, 색 등을 다르게 사용한다.
  - 보호자 설명회, 발표회, 모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높은 가변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 유희실에는 놀이도구와 교구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 구조**
- 유희실은 어린이집의 규모가 큰 경우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가변적 통합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유희실 계획 시 기둥이나 돌출된 형태의 구조를 최소화한다. 불가피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면에서 1.2m 높이까지 완충재를 설치한다.



## 세부지침

### 마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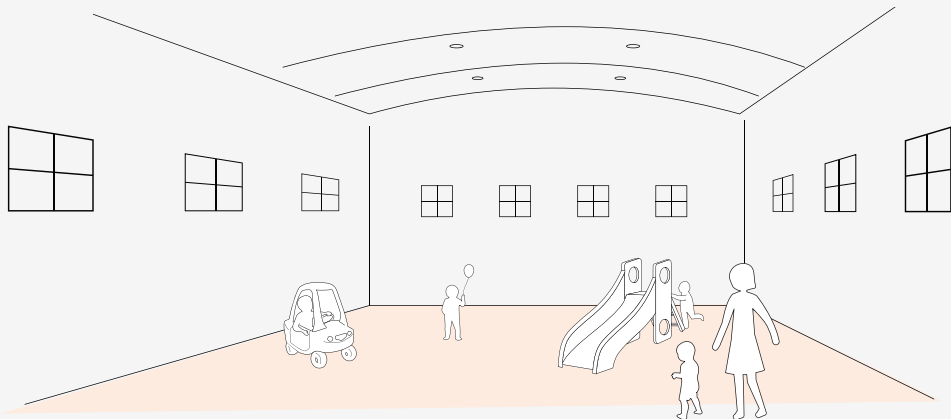
-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활동공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벽, 바닥, 천장에 차음성과 흡음성이 우수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유희실의 바닥은 안전을 위해 충격흡수 마감재를 설치한다
- 다양한 활동의 성격에 적합한 바닥재를 활동영역별로 다르게 제공하도록 한다.

### 가구

- 유희실은 실내에 조성된 놀이터 개념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기구와 설비를 갖춘다.

### 채광

- 채광과 환기가 좋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채광을 차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대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동의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공해야 함



넓은 공간과 작은 알코브, 놀이집과 수납장의 아래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 조성

## 2.3. 놀이터

- 자연을 경험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모험과 창의적 놀이가 가능한 자연적 놀이공간으로 계획한다.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고, 교사의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개방성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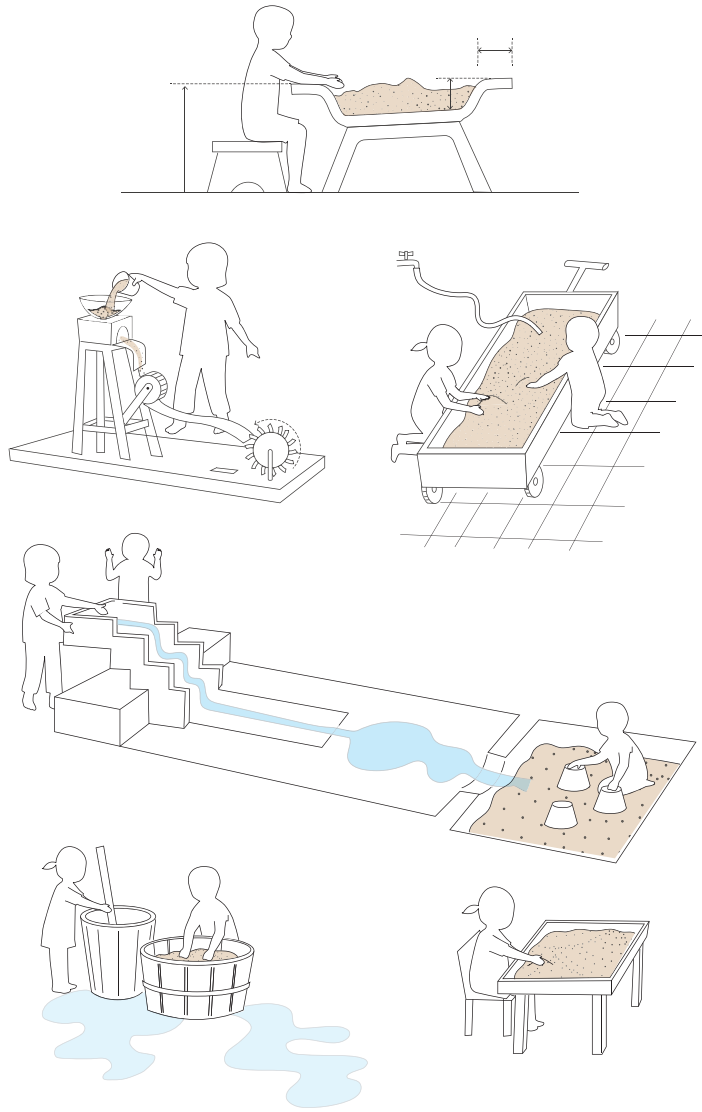
### 계획지침

- |                |  |
|----------------|--|
| <b>위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 또는 실내에서 실외 놀이공간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데크, 포치, 파티오 등의 전이공간을 설치한다.</li> <li>• 비, 눈,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는 캐노피가 있는 전이공간과 연결되도록 계획한다.</li> </ul>  |
| <b>규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원칙적으로 설치한다.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가 불가하고,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한다.</li> <li>• 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고, 적절한 조명·채광·환기·온·습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
| <b>기능 및 배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모든 영역을 쉽게 볼 수 있고, 영역을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li>• 놀이특성에 따라서 조용한 놀이영역과 활동적 놀이영역으로 분리되도록 하되 비슷한 활동은 가까이 배치한다.</li> <li>• 고정된 놀이기구보다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낮은 언덕, 경사, 비탈길, 오솔길, 나무, 꽃 등 자연요소를 연결하여 창의적인 놀이영역을 흥미롭게 구성한다.</li> <li>• 실외놀이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빈 공간을 제공한다.</li> <li>• 낙상 위험이 있는 곳은 모래, 나뭇조각 등 부드러운 바닥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두께로 설치한다.</li> <li>• 물놀이영역은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고, 배수구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li> <li>• 실외놀이터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내화장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



수납공간

- 실외놀이터에는 다양한 크기의 실외 놀이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수납용 창고를 설치한다.



실외놀이터에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영역과 모래놀이영역을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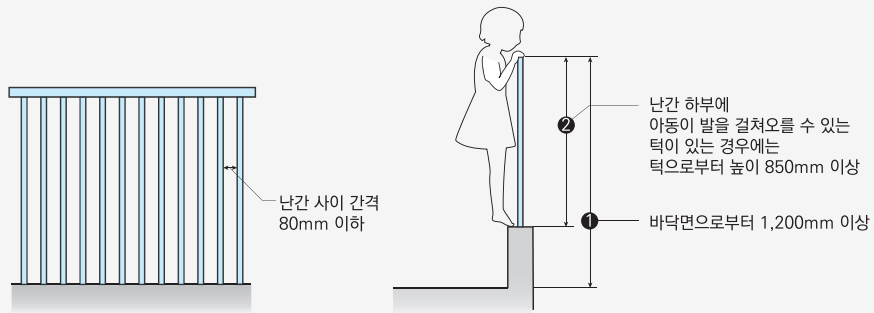
세부지침

마감재

- 다양한 실외놀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친환경 소재의 모래,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 등 다양한 바닥재를 사용한다.
- 실외놀이터는 바퀴 달린 장난감, 세발자전거를 위해 단단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눈, 비 등 기상조건을 배려하여 적절한 배수로를 계획해야 하며, 건물 주변일수록 빨리 건조되는 바닥재를 사용한다.
- 옥상놀이터는 빗물 등의 배수, 방수, 위생관리가 잘 되도록 마감재로 포장하고, 일사병 예방을 위해 그늘막을 설치한다.
- 영아를 위한 실내놀이영역은 도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어 다닐 수 있는 부드러운 바닥, 걸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 따뜻한 재료, 다양한 질감, 약간의 경사로, 안전한 계단 등을 제공한다.

안전설비

- 옥내놀이터(실내, 옥내중간, 옥상)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옥내중간놀이터 및 옥상놀이터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다.
- 난간은 아동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여야 하며, 콘크리트, 조적(벽돌 등), 강화유리 등 부식이나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한다.
- 난간은 최소높이 1.2m 이상, 안치수 80mm 이하로 설치한다.
- 난간에 설치되는 문은 휠체어를 타고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높이를 1.2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놀이요소 및 놀이기구**

- 3세~5세 유아는 매우 활발하고 탐험하기 좋아하므로 다양한 높이에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요소와 설비를 제공한다.
- 영아와 유아가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놀이영역으로 분리하고, 아동의 신체크기에 적합한 공간과 발달단계에 알맞은 시설물을 제공한다.
- 다양한 놀이환경이 되도록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조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조 이상을 설치한다.
- 머리와 손가락 끼임, 추락 등의 위험이 없도록 놀이기구 및 아동용품은 「영유아보육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안전범위를 확보한다.

**휴게공간**

- 아동이나 교사가 앉아서 다른 아동의 놀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벤치와 의자를 제공한다.

**기타설비**

- 실외놀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감염, 질병 등에 대비하여 세면대나 수도설비를 설치한다.
- 전이공간에 실외놀이용 신발, 여벌옷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설치한다.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시가 있는 식물이나 유독식물을 제거한다.
- 야간 이용을 배려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낮은 언덕, 지형을 이용한 미끄럼틀, 계단, 흙과 잔디 등 자유롭고 창의적인 실외놀이터 구성



기구를 활용한 실내놀이터



놀이기구를 활용한 실외놀이터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으로 정원 조성



생태체험 및 교육활동으로 텃밭 운영

## 2.4. 식사실

### 계획지침

#### 기능 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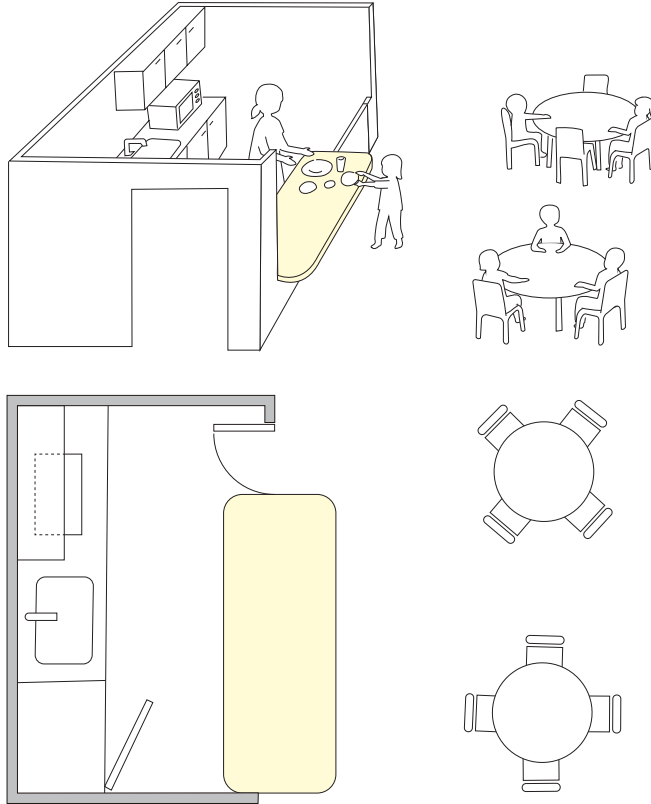
- 자연스러운 식습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식사공간을 만든다.
- 4명~6명의 아동이 대화하며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집단별로 식사영역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 아동이 식사실 또는 보육실 내 식사영역에 앉아서도 주방 또는 간이부엌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식사실과 주방 사이에는 큰 창을 둔다.
- 창 아래 앉는 공간, 독서영역, 벤치 등 식사를 먼저 끝낸 아동을 위한 휴식 및 흥미영역 공간을 계획한다.

#### 가구

- 각 연령별 아동의 신체크기에 맞는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한다.
- 테이블과 의자, 조명, 커튼, 테이블보 등은 포근하고 편안한 식사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디자인한다.
- 테이블보, 식기, 컵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제공하되, 아동이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아동의 키 높이에 맞춘다.
- 손이나 컵 등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를 설치한다.

**채광 및 환기**

- 환기, 채광, 조망을 위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되, 안전을 위하여 150mm 이하로 열리게 하거나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주방과 식사공간 사이에 배식대를 두어 공간을 분리하되 서로 연결되도록 함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하여 식사공간을 구성

## 03 관리 및 서비스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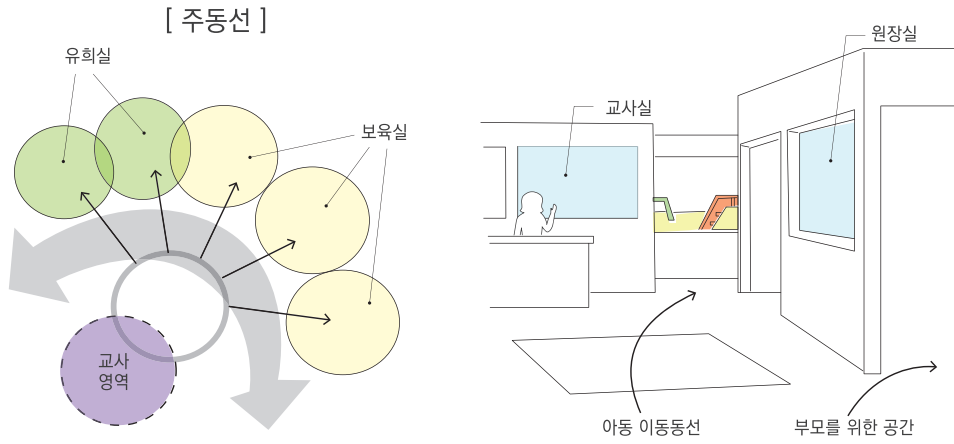
### 3.1. 교사실

- 어린이집 내외부의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동선 상에 배치한다.
- 교사의 사무작업이나 상담, 회의 등 업무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 계획지침

- 위치**
- 교사실은 건물의 중앙통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나 외부공간 또는 주출입구에 직접 면한 위치에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왕래하는 부모와 아동, 외부인 출입 통제 등에 효과적하도록 창이나 작은 문을 설치한다.
  - 교사실은 현관, 보육실, 교구보관실, 양호실, 상담실, 화장실 등과 인접하도록 계획한다.
  - 사무공간은 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이나 시끄러운 설비와 분리되도록 한다.
  - 교사실은 아동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교사가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도록 현관 및 출입구와 보육실 등의 상호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 기능 및 배치**
- 사무공간은 활발한 만남과 대화가 일어나도록 따뜻하고 친근감을 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계획한다.
  - 회의실, 상담실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교사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과 시각·청각적으로 분리된 회의 및 상담공간을 제공한다.
- 출입문**
- 기밀성이 요구되는 교육 상담, 개인 상담 등을 위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창을 설치한다. 내부에서는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마감**
- 사무와 상담을 위해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거나 방음 기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 가구**
- 회의나 교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넓은 면적의 테이블이 있는 작업공간을 계획한다.
  - 각종 행정서류 및 교구의 수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교사용 개인사물함과 방문객을 위한 옷장을 설치한다.
  - 교사실 내에 소규모의 싱크대 설치를 권장한다.





사무공간은 아동활동공간을 볼 수 있으며, 실내에서의 사람의 움직임과 출입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함



상담실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원장실



교사휴게실과 교사실은 별도 조성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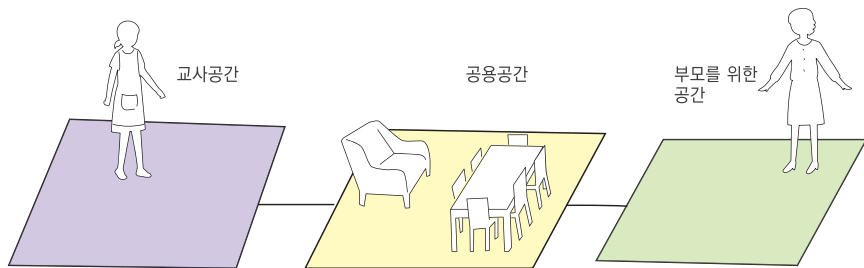
## 3.2. 기타 사무공간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사실과 연결된 회의실, 교구보관실, 휴게공간 등을 배치한다.
- 별도의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실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계획지침

#### 회의실

- 정기적인 교사회의와 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회의공간을 설치한다.
- 회의실은 상담실이나 부모를 위한 공간 등 다른 공간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원장실과 사무실 등의 사무공간과 인접하되 현관이나 보육실과는 떨어진 위치에 배치한다.
- 건물의 다른 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방음이 잘 되는 곳에 둔다.



회의실을 교사공간과 부모를 위한 공간의 공용공간으로 사용함

#### 교구보관실 (자료실)

- 교구보관실은 보육실과 사무실로부터 가까운 동선에 배치한다.
- 시설 내에 교구 및 기타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별도로 계획한다.
- 물품 종류별로 보관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색, 패턴 등을 이용하여 체계화 시킨다.
- 부피가 큰 교구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 폭은 충분히 넓게 해야 한다.
- 부피가 작은 것과 큰 것, 세워두는 것과 눕혀두는 것 등 자료실에 보관할 물품과 교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과 수납장의 깊이, 높이, 길이를 다양하게 계획한다.
- 교재나 교구를 준비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한다.
- 필요에 따라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수납장을 설치한다.



**교사휴게실**

- 교사가 편하게 쉴 수 있고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눈에 띄지 않고 방음이 잘 되는 분리된 장소에 배치한다.
- 사무실, 성인용 화장실과 가까이 있으며 보육실, 교구보관실, 작업공간 등과는 떨어져 있도록 배치한다.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하고, 휴게실에서 실외 테크나 작은 정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침대나 소파 등 편안한 가구,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 간이부엌, 책장, 식물 등을 둔다.

**상담공간**

- 교사 또는 다른 부모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방음이 되는 독립된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교사공간에서 접근이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부모를 위한 공간에는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되도록 부드러운 조명, 3명~5명의 성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옷장, 책장, 게시판 등을 설치한다.
- 부모를 위한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울 경우 회의실, 자료실, 교사실, 원장실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현관 앞, 로비, 복도, 보육실 앞 등 부모와 교사의 비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알코브와 같은 작은 공간 등을 설치한다.

**양호실**

-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양호실을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 공간이 여의치 않아 다른 실과 겸용하거나 부속으로 계획할 경우 시청각적으로 분리되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아늑한 느낌으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침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춘다.
- 약품수납장을 두되, 위험한 약품은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둔다.
- 눈부심이 없는 부드러운 간접조명을 설치하고, 창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 3.3. 조리실

- 조리실에서 식자재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신체적 다양성과 최적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배치한다.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 설치를 고려한다.

#### 계획지침

- 규모**
-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리실 조성을 위해 조리인력과 식자재 관리 및 조리 동선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한다.
- 배치**
-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식자재 보관, 전처리, 조리, 배식, 세정, 정리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설비와 분리된 출입동선 등을 계획한다.
  -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조리공간은 대규모 조리 및 위생관리가 가능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다.
  - 주방과 식사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되 시각적으로는 연결되도록 한다.
  - 조리실 직원들의 탈의 및 휴게공간, 세면 및 샤워공간을 계획한다.
- 채광 및 환기**
- 환기를 고려하여 한 면 이상이 외기에 면하도록 하며, 환기와 채광을 위한 창문과 방충망을 설치한다.
  - 조리실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기계식 공조설비와 위생적으로 준비, 보관, 조리하고 식기류 등의 소독과 건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다.



적절한 작업동선을 위한 C자형 주방설비 배치

## 세부지침

### 마감재

- 조리실 바닥은 내수 재료로써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한다.
- 조리실의 벽면은 타일로 처리하여 조리 및 식자재 가공으로부터 위생적 관리가 가능한 기능성을 확보한다.

###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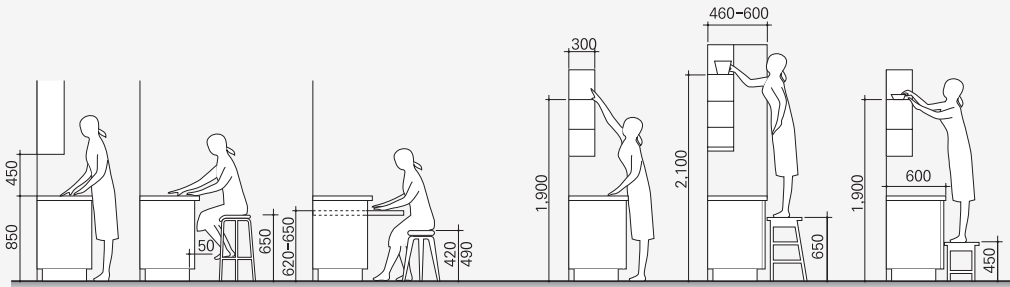
-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출입가능하며, 식재료 등의 반입을 위해 충분히 넓은 문을 설치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통과 유효폭 0.9m 이상
  - BF 최우수 : 통과 유효폭 1.2m 이상

### 주방설비

- 조리실에 관한 제반규정은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급식시설.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 조리실의 배수용량 및 급수용량, 가스설비 용량은 대규모 조리를 위한 설비규모를 고려한다.
- 부분 작업대를 상하구동식으로 하여 이용자의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조리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조리대 등은 모서리가 둥근 가구나 코너비드(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청소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내오염성이 강한 소재의 가구와 설비로 계획한다.
- 식사운반카트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주방가구 설치 시에는 주방 동선을 고려하고, 조리원과 교사의 신체치수에 맞추어 높이를 조정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조리대의 상단까지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이내

### Tip 조리대의 높이

- 조리대의 높이는 이용자의 신장높이의 절반에 5cm를 높였을 때 적정 높이로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에 따라 사용이 편한 높이가 다르므로 설치 시에 높이를 조정한다.



이용자의 신체 높이를 고려하여 조리대 및 수납공간 설치 높이 계획 (단위 : mm)

### 안전사고 예방

- 화재 감지장치와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일괄 소등이나 가스 차단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선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콘센트를 매립형으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가전제품 사용을 위해 전선을 연장하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케이블 박스 설치나 전선 몰딩 처리를 한다.
- 아동의 출입을 막기 위해 조리실에 안전 문(펜스)를 설치하여 가열 기기나 조리 기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3.4. 세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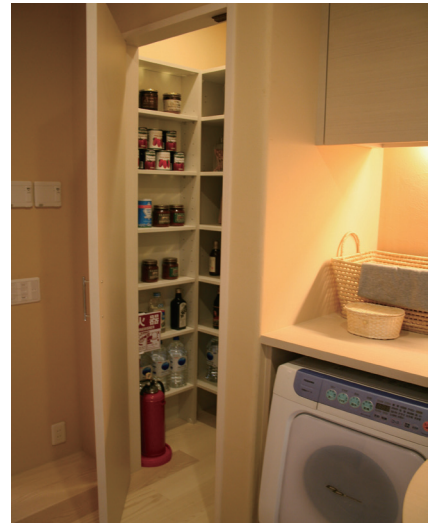
- 세탁실은 관리 및 지원공간과 인접하고, 보육실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 세탁기와 건조 설비는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인접하여 배치한다.
- 설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계획지침

- 영유아 개인의 침구는 가정에서 별도로 세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수건 등의 린넨용품, 직원유니폼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공간을 마련한다.
- 세탁실은 조리실이나 교사용 화장실에 인접하면서 보육실과 분리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동선을 단축하기 위해 세탁실에 인접한 위치에 건조를 위한 별도의 실이나 발코니를 계획한다.
- 세탁물을 넣고 꺼내기 쉽도록 세탁기의 높이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 편의성을 더한다.
- 베란다에 세탁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탁기의 접근성 및 배수를 할 때 물이 넘어 오지 않도록 단차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세탁물 건조공간 및 마무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인접 배치한다.
- 세탁실에는 세제, 약품, 청소도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공간을 설치한다.



세탁실 옆에 세탁물 건조 및 정리공간을 마련



세제, 약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설치

## 04 이동공간

### 4.1. 복도

- 비상대피와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고려한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 각 실과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계획한다.
- 복도공간은 이동뿐만 아니라 휴식과 활동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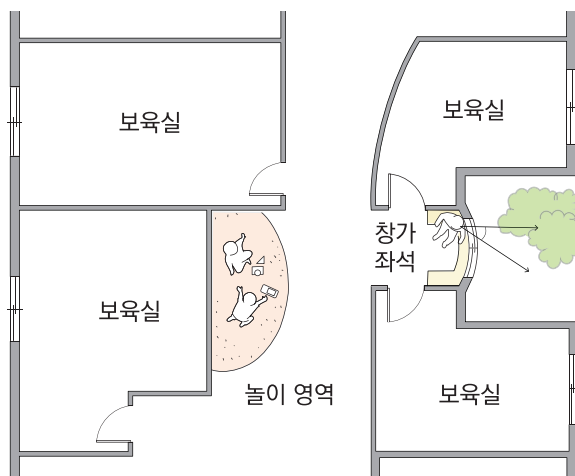
#### 계획지침

#### 기능

- 단순한 이동통로라는 느낌을 없애고 아동과 아동, 아동과 교사, 교사와 부모가 만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복도와 각 실이 연결되는 복도와 광장공간은 아동의 연령 구분없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관계와 공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휴식공간이나 극놀이공간 등 사회적 접촉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넓게 계획한다.
-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장식물과 벽걸이, 작은 벽감, 통로의 크기와 모양, 재료, 색, 조명 등을 이용하여 공간에 대한 방향성을 부여한다.

#### 구조

- 복도는 보육실과 화장실 등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긴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순환되는 경로를 만든다.
- 복도공간을 휴식과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때에는 알코브 형태로 오목한 공간을 형성하여 설치한다.
- 외부공간을 볼 수 있는 곳에는 창문을 설치한다.



폭이 다른 복도와 알코브, 창가의 앉는 공간 등을 두어 복도가 사회적 접촉, 놀이, 실외조망 등이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공간이 됨

- 단차**
-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가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은 비상대피를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로 계획하고, 어린이집 실내에서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의 너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해당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1.5m~2.4m 이상
    - 장애인등편의법 : 복도 유효폭 1.2m 이상,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
    - BF 최우수 : 복도 유효폭 1.5m 이상
- 보행장애물**
-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곡선형 통로를 지양한다.
  - 복도의 벽 모서리는 부딪혀도 상처입지 않도록 둥글게 처리하거나 코너비드(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구와 소화기 등은 매립형으로 수납한다.
  - 복도 벽면에는 이동 중 부딪히지 않도록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도록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바닥으로부터 0.6m~2.1m 이내 벽면에서 돌출폭은 0.1m 이하
    - BF 최우수 : 벽면에 돌출물 및 설치물과 바닥 이동 장애물 설치 지양
  - 의자나 책꽂이, 사물함 등 가구는 통행에 장애나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세부지침

- 마감재**
- 공간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방향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패턴을 이용하여 흥미로운 놀이요소를 구성하거나 길찾기를 위한 이정표로 계획한다.
- 손잡이**
- 몸이 불편한 아동과 보호자, 방문자를 위해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아동의 다양한 연령대와 신장을 고려하여 2중으로 설치하고, 손잡이 높이는 상단 손잡이 0.85m 내외, 하단 손잡이 0.65m 내외로 한다.

- 손잡이 굵기는 3.2cm~3.8cm로, 한 손에 잡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의 간격이 5cm 내외로 하여 손이 끼이거나 돌출되어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 손잡이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래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거나 2단 손잡이는 상하 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
- 차갑고 미끄러운 금속 재질의 손잡이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저해하므로 지양한다.

**가구**

- 복도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파, 장신구, 그림 등을 놓아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가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채광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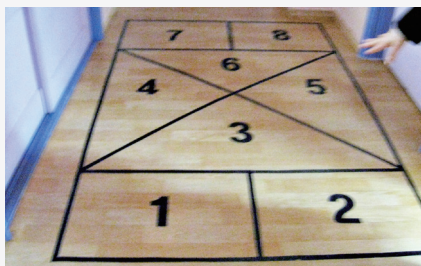
- 창문을 통해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이 어려울 때는 인공조명을 계획하여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의 복도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화장실, 현관 등 필요한 공간까지 유도하는 센서가 있는 발밑조명을 설치한다.

**피난·대피설비**

-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되, 비상등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글 등을 이용하여 계획한다.
- 소화기는 위급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되, 평상시 아동의 손이 닿지 않고 이동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시야가 차단되지 않고 방향전환이 인지 가능한 복도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복도공간



막다른 복도공간을 활용한 도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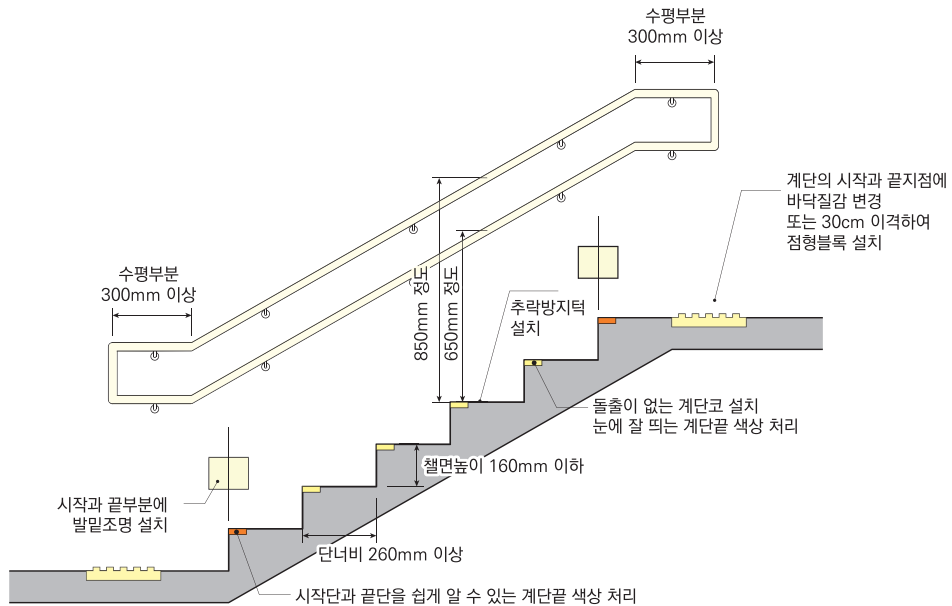


## 4.2. 계단

-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안전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도록 설치한다.
- 철탈면의 높이가 불규칙한 경우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계단에서 디딤판·철탈면의 치수가 동일하도록 설치한다.

### 계획지침

- 구조**
- 시야가 차단되는 고립된 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공간구성에 유의하고, 계단실, 막다른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일부를 유리로 마감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 형태 및 유효폭**
- 계단의 형태는 직선 이동과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실족하기 쉬운 나선형 계단은 지양한다.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권장하며, 계단의 유효폭과 높이, 너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장애인등편의법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 이상
    - BF 최우수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 이상
- 철탈면 및 디딤판**
- 아동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계단 디딤판의 너비는 26cm 이상, 철탈면의 높이는 16cm 이하로 하되, 하나의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탈면의 높이는 동일하게 한다.
  -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목발이나 아동의 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철탈면은 막힌 구조로 설치한다.
  - 높이 1.8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휴식참을 설치한다.
  - 계단코는 3cm 미만으로 설치하여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계단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 세부지침

### 바닥마감

- 계단의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디딤판, 철편, 계단코는 약시 등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의 색상, 명도, 채도, 질감 등을 달리한다.
- 특히 철편과 디딤판의 경계와 계단의 시작과 끝단의 디딤판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전면에는 저시력자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거나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손잡이

-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계단 손잡이는 성인용과 별도로 계단바닥에서 600mm~700mm 높이에 보조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 이동공간 복도 손잡이(75p)를 참고한다.

**조명**

- 실내 계단은 야간에도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천장 조명, 발밑 조명, 비상용 조명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디딤판과 철타면의 구별이 쉽도록 한다.

**기타 설비**

- 계단실 중간층 벽면에 거울을 부착하여 어린이가 반대편에서 오르내리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계단 난간을 타고 내리는 등의 장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난간을 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되, 손잡이 이용에 최대한 방해를 주지 않도록 크기와 개수를 최소한으로 하며, 날카롭지 않은 형상으로 한다.
- 아동의 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난간 사이의 간격은 80mm 이하로 한다.



안전 손잡이 미설치 및 계단 식별 어려움



▶ 계단 철타면마다 조명을 설치하여 바닥면을 명확하게 인지 가능



계단코 식별과 미끄럼 방지 처리 미흡



▶ 규칙적인 방향 전환과 시작과 끝을 명확히 안내하는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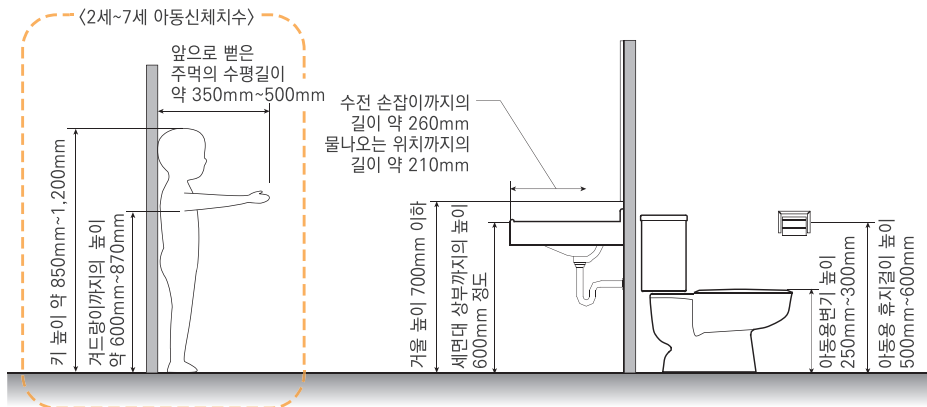
## 05 위생공간

### 5.1. 화장실

- 아동이 쉽게 이용하도록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대·소변기 및 세면대 등의 설비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획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조성한다.
- 위생적 관리가 가능한 설비와 마감재를 사용한다.

#### 계획지침

- 위치**
- 화장실은 보육실 내에 두거나 보육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여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차**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문턱이나 바닥 단차가 없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평탄하게 한다.
- 출입문**
- 출입문은 화장실 바깥으로 열리는 밖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의 형태로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출입문 유효폭 0.9m 이상
    - BF 최우수 : 출입문 유효폭 1.2m 이상
- 채광 및 환기**
-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외기에 면한 곳에 배치한다.
  -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참고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https://sizekorea.kr>)

## 세부지침

### 마감

- 부드러운 조명, 장식물, 큰 거울 등을 설치하여 집처럼 즐겁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바닥 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바닥매트 설치 시에는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는 오염에 강하고 자국, 흠집이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 시 교체가 가능하며 미적인 부분 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화장실의 물청소 등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는 1/100 이하로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바닥면 기울기 1/30 이하
- 바닥난방을 설치하여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물때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대변기부스

- 아동의 신체크기에 적합한 세면대, 변기, 소변기, 칸막이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칸막이의 높이는 교사가 관찰할 수 있도록 0.9m~1m로 설치한다.
- 칠판, 조각, 장식물 등 아동이 관찰하고 만질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주는 형태의 칸막이나 벽면을 제공한다.
- 변기 부스의 칸막이 또는 문은 아동의 키에 맞는 높이로 설치하고, 아동이 열고 닫기 쉬운 형태로 하되 비상시 밖에서 열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라 차이를 두어 계획한다.

### Tip

#### 연령대별 대변기부스

- [ 0세~1세를 위한 화장실 ] 교사의 도움을 받아 배변훈련을 하는 시기이므로 교사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칸막이 없이 또는 낮은 칸막이를 설치한다.
- [ 2세~3세를 위한 화장실 ] 개개인의 성장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칸막이가 없는 변기와 스스로 배변활동을 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낮은 칸막이 또는 문이 있는 변기 부스로 나누어 계획한다.
- [ 4세~5세를 위한 화장실 ] 스스로 배변활동이 가능하므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문이 있는 부스로 설치한다.

**대변기**

-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변기를 설치하고 배변을 도울 수 있도록 변기 앞에 0.6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 아동용 변기의 높이는 0.25m~0.3m, 폭 0.3m, 길이 0.6m 정도로 한다. 개조가 어려울 때에는 유아·성인 겸용 변기커버를 설치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정감 있는 배변자세를 위해 손잡이(직경 27mm 권장)를 설치하고, 세정장치와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에 닿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 버튼, 레버식 등 작동이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변기의 수량은 유아 10명당 1개를 기준으로 수세식 어린이용 양변기를 설치한다.
- 성인용 대변기는 등받이와 비데 기능이 있는 양변기를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의 범위로 설치한다.

**소변기**

- 소변기는 아동의 성장기와 연령대에 따른 신장의 차이를 고려하고, 사용과 청소관리가 쉽도록 바닥 부착형의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 소변기는 바닥으로부터 약 0.3m~0.53m 정도의 사용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세면대**

- 세면대의 하부에 무릎이 부딪히지 않도록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으로 설치한다.
- 성인용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아동용 세면대는 사용 편의성을 위해 상부 높이를 0.6m로 하며, 하부 및 설비공간의 하부는 영유아가 들어갈 수 없도록 틈을 두지 않는다.
-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이용할 경우에는 아동의 사용성에 맞추어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거나, 신장 높이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발판을 두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면대 수도꼭지는 세면대 상부 앞으로부터 최대 500mm 이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전 손잡이와 물이 나오는 위치와 간격에 유의한다. 단, 세면대가 깊어 아동이 수전까지 손을 뻗기가 힘든 경우 수전을 세면대 옆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하고, 냉온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온도조절이 쉽고,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한다.
- 거울은 낮은 키의 아동을 위해 전면 거울을 설치하거나 거울 상단부분을 15°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설치한다.
- 용변 실수 등의 세정을 위한 샤워기를 설치한다.

**다인용 세면대**

- 다인용 세면대의 경우 영아용 세면대의 폭은 400mm 이하로 하고, 유아용 세면대는 폭 500mm~600mm 높이 450mm로 계획한다.
- 여러 명의 아동이 함께 양치할 수 있도록 세면대를 가로로 길게 설치한다.

**수납공간**

- 개인 양치컵과 칫솔, 휴지, 수건, 비누, 여벌 옷 등의 비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대걸레, 손걸레 세척공간을 설치하고, 청소용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한다. 아동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교사가 확인가능한 높이의 대변기 칸막이



연령대별 신체치수를 고려한 위생설비



칸막이로 변기, 소변기를 분리한 4세~5세의 보육실 내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 장애인화장실은 다목적 사용을 고려하여 학부모 및 방문자를 위한 성인용 화장실과 함께 1층 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
- 단, 교사 및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과 화장실을 공유한다.





---

## 2. 인테리어디자인

01 마감재

02 문과 창

03 색채

04 조명

05 안내사인

06 가구

## 01 마감재

### 1.1. 외부 마감

- 주변 환경이나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따뜻하고 친숙한 분위기로 외부와 마감 계획을 한다.
-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진출입로에서 건축물 외관까지 설계에 반영한다.
- 빛 반사, 미끄럼, 사각지대 발생 등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는 선택하지 않는다.

#### 보행로

- 모든 보행로는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표면이 단단하고 요철 없이 매끄럽게 포장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저시력인의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채도, 고명도의 과장된 패턴이나 자극적인 색채의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지양한다.
- 장식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교체가 용이한 블록형 포장재나 현장 타설형 재질을 권장한다.
- 블록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단위 규격이 큰 제품을 권장하며, 경계부와 곡선부의 미려한 마감 등 높은 시공 완성도를 권장한다.

#### 건축물 외관

- 건축물의 외관과 마감은 심미성, 기능성, 자연친화성,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과 같은 느낌을 주는 마감재는 지양한다.
- 마감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공간에 사용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획일적인 입면 디자인보다는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한다.
-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 입면 색채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색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내구성 있고 관리·보수·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날씨 변화와 외관 청소로 인해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에도 낙상과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고 오염과 단열에 강한 마감재를 적용한다.

## 외부공간

- 다양한 실외놀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친환경 소재의 모래,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 등 다양한 바닥재를 사용한다.
- 실외놀이터는 바퀴달린 장난감, 세발자전거를 위해 단단한 바닥재를 제공하고, 눈, 비 등 기상조건을 배려하여 적절한 배수로를 계획해야 하며, 건물 주변일수록 빨리 건조되는 바닥재를 사용한다.
- 옥상놀이터는 빗물 등의 배수, 방수, 위생관리가 우수한 마감재로 한다.
- 영아를 위한 실내놀이영역은 도전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어 다닐 수 있는 부드러운 바닥, 걸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 따뜻한 재료, 다양한 질감, 약간의 경사로, 안전한 계단 등을 제공한다.

## 1.2. 내부 마감

- 아동의 활동성에 맞추어 기능성, 내구성, 인지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안전한 재료를 선정한다.
-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하여 자연소재와 친환경 마감재를 선정한다.

### 일반사항

- 내부 마감은 이용자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계획한다.
- 공간별 성격에 따라 마감재와 색채, 조명 등을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통일성과 규칙성을 유지한다.
- 마감재는 단가뿐 아니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성·내구성·단열성과 탈취와 항균성의 기능이 있는 마감재를 선택한다.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 난연재료를 선택한다.
- 시설적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보다는 목재, 벽돌, 황토, 패브릭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 항균 마감재나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천연소재를 권장한다. 단, 시공에 사용하는 접착제 등도 무해한 성분으로 적용한다.
- 색상과 재료의 배치를 통해 공간감을 부여하고 시각적 대비를 통해 공간적 역동성과 다양한 감각 정보(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이용자의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는 색채와 패턴, 광택 등은 지양한다.
- 바닥, 벽, 천장 간의 시각적 차이는 인지 기능이 낮은 이용자가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바닥과 벽체 또는 돌출부를 쉽게 인지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재료의 색채와 질감 등에 차이를 둔다.

### 바닥 마감재

- 아동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충간 소음 방지 등을 위하여 내구성과 방음성, 흡음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아동이 뛰거나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탄력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시각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광택이 있고 눈부심이 강한 재료는 지양한다.
- 한 공간에서 바닥 마감재가 2종 이상 사용될 경우, 경계부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높으므로 보행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배치한다. 또한 시공 시에 마감재 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복잡한 무늬나 크고 강한 패턴은 시각에 혼란을 주고 이용자가 장애물이나 단차로 오인할 수 있기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강한 대비의 선은 단차 또는 계단으로 오인할 수 있음)
- 바닥은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내구성이 있고, 오염 시 쉽고 빠르게 청소가 가능한 재료를 선택한다.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마모륨	친환경 천연소재,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내구성, 방음, 충격 흡수, 방습효과, 항균성, 난연성, 다양한 색상 적용이 가능함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무석면타일	불연재(소방기준에 적합), 경제적, 내마모성,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다양한 색상 적용이 가능함	
전도성타일, 대전방지타일	대전 방지성, 내약품성, 내스크레치성, 치수안정성 등 기능이 다양함 내오염성,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천연대리석 및 카펫 무늬 효과 부여가 가능함	
강화마루	친환경 제품, 기능성(살균/항균 작용 등), 고온 및 습기에 강함	생활공간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친환경마루	천연원료(옥수수-PLA, 황토, 목분, 천연석, 구연산 등), 무해성, 내소음성, 내마모성, 열전도율 좋음 스팀청소, 왁스 사용 불가함	
코르크마루	자연친화적 제품이며 인체에 무해함 충격 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내소음성이 뛰어남	
차음시트	고탄성층의 충격 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고후도 제품(6T)으로 소음 감소 효과,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고탄성 바닥시트	충격 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소음성, 탄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세라믹타일	화산재를 이용한 세라믹 제품, 탈취 효과, 습도조절, 항균성, 유해 물질 흡착, 유지 보수 및 내구성 취약	생활공간,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황토타일	원적외선 방사, 탈취, 공기 정화, 항균성, 습도조절, 유지관리 용이	

**벽 마감재**

- 따뜻하고 차분한 색상으로 마감하되, 층별 또는 실별 성격에 따라 변화를 주도록 권장한다.
- 벽에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짚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하기 쉽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 벽이 사람의 시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주조색은 차분한 색채로 선택한다.
-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강한 색채나 패턴보다는 차분한 색채의 벽을 기본으로 나무 재질의 문이나 가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 색채나 문양은 활동 단위별, 층별, 실의 성격별 등 공간의 기능에 따라 변화를 주도록 권장한다. 단, 자폐증상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으로 연속된 패턴의 사용을 지양한다.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친환경 벽지	유해 물질 분해, 인체에 무해함, 탈취성	생활공간 전반
천연벽지	인체에 무해함, 탈취성, 항균성, 함유 성분에 따른 기능성(바이오 원적 외선, 습도조절, 피톤치드 방출 등)	
인테리어타일 (인조대리석)	내오염성, 유지관리 용이	현관
우드패널	친환경 제품, 방염, 벽지보다 내구성 및 내오염성 우수, 특수 코팅처리로 유지관리 용이	생활공간 (침실 등)
타일 (기능성타일)	천연소재(황토), 유해 물질 감소, 항균성, 향취성, 습도조절	생활공간 (현관 등)
규조토, 규조토 보드	불연건재, 습도조절, 탈취, 항균, 실내공기 정화, 차음성, 기능성(포름알데히드·VOC 흡착분해, CO2흡수, 음이온 방출 등)	생활공간 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세척성, 저취, 항균성, 유지 관리 용이	
천연칠	유기농 원료 사용, 인체에 무해, 다양한 색상, 목재 수명 연장	

**천장 마감재**

- 보육실이나 유희실의 천장은 조명이나 구조 변화를 통해 감성적인 디자인과 색채로 계획한다.
- 복도의 천장은 높낮이, 마감 형태 등을 동일 층이라도 달리 처리하여 인지성을 높일 수 있다.

- 주조색은 밝고 차분한 색채로 선택하고 나무 재질의 마감 등으로 포인트를 준다.
- 밝은 색채로 계획하여 빛이 고르게 바닥과 벽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텍스	불연 천장판, 무해성, 단열성, 경량성, 흡음성, 유지 보수 용이 (유해 물질 분해 성능, 특수도로 도장 마감)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SMC 천장재	친환경 소재, 준불연재, 내구성, 내수성, 내습성, 항균성, 유지 보수 용이	욕실
규조토, 규조토 보드	불연건재, 습도조절, 탈취, 항균, 실내공기 정화, 차음성, 기능성(포름알데히드·VOC 흡착분해, CO2흡수, 음이온 방출 등)	생활공간 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세척성, 저취, 항균성, 유지관리 용이	
천연칠	유기농 원료 사용, 인체에 무해, 다양한 색상, 목재 수명 연장	

**흡음재**

- 다수의 아동과 교사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각 공간의 용도와 기능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방음 및 흡음(소음 흡수) 재료를 사용하여 소음을 방지하도록 한다.
- 흡음재의 성능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마감재를 계획한다.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차음재	친환경 제품(황토, 맥반석 등을 첨가한 제품), 원적외선 방출, 마감 두께 (1T~4T) 대비 고성능, 시공 용이	방음 및 차폐가 요구되는 프로그램실 등
나무섬유 흡음재, 목모보드	흡음성, 난열성, 단열성, 항균성, 내구성, 내습성, 시공 용이, 변형 적음	
아트보드	폴리에스터 섬유, 인체에 무해, 곡면 및 원형기둥 등에 사용 가능, 시공 용이, 형태 안전성 높음, 다양한 색상, 재사용 가능, 연소 시 유독가스 미발생	
천연 면보드/후레쉬 보드	천연섬유 면사와 독성이 없는 팽창 퍼라이트 사용,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색상, 불연성, 흡음성, 보온성, 보냉성, 단열성, 무해성, 안전성, 시공 용이	
흡음판넬	친환경성, 유지 관리가 용이함, 항균성, 방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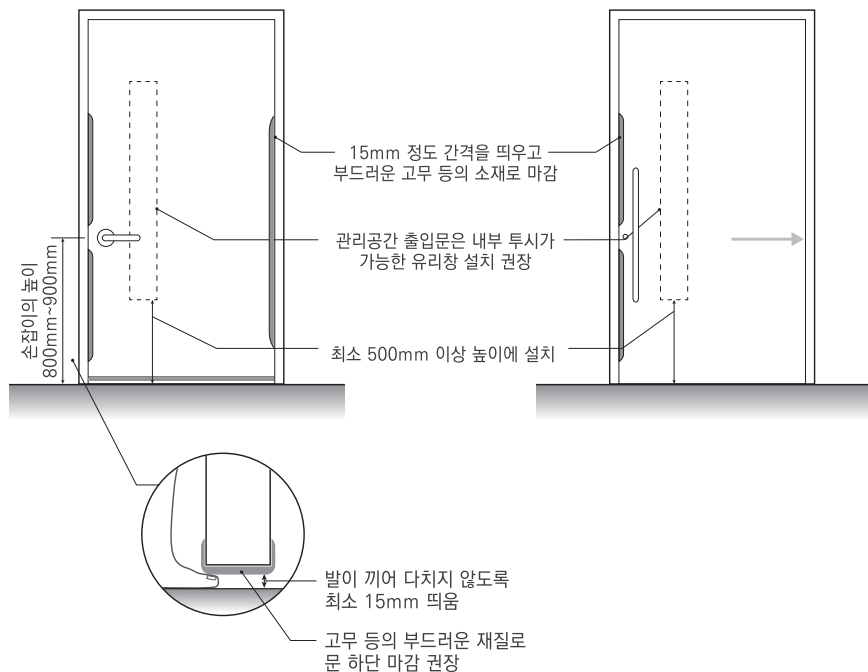
## 02 문과 창

### 2.1. 문

- 재난 발생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선택한다.
-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손잡이, 투시창 등의 설치 높이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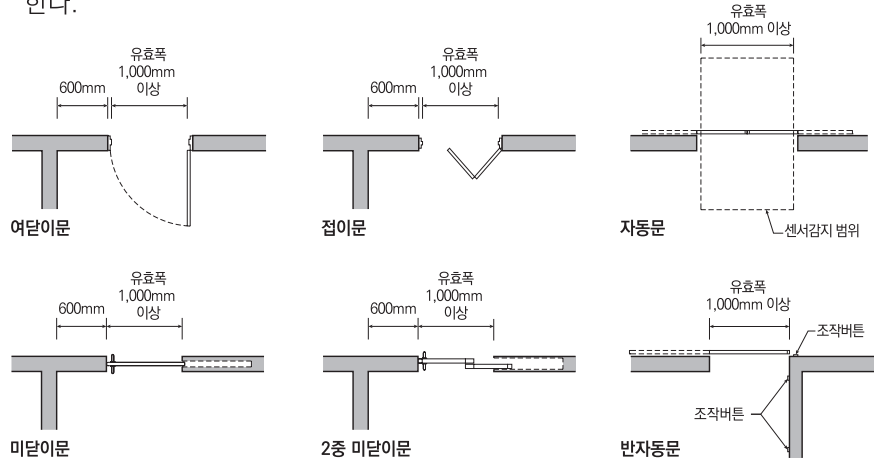
#### 일반사항

-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은 건물 내에서 동일하게 통일하여 이용자가 혼란이 없도록 한다.
- 출입구 문 안쪽으로 열고 닫을 때 다른 이용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필요시에 개폐 범위에 색상에 차이를 두거나 주변으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아동이 개별로 사용하는 보육실 출입문은 여닫이문보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개폐할 수 있는 미닫이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회전문은 아동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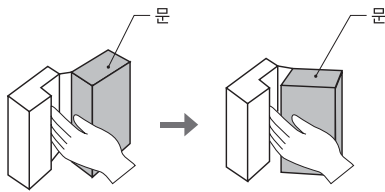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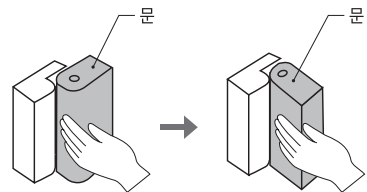
- 아동도 열기 쉽도록 무겁지 않으며, 문지방이나 홈이 없이 평탄하도록 한다.
- 문은 천천히 닫히도록 도어체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 출입문보다 무거운 현관문이나 주출입구의 문에는 반드시 도어체크를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도어체크 문이 닫히는 시간 3초 이상
- 문의 종류에 따라 문을 열기 쉽도록 측면 공간 0.6m 이상을 확보한다. 여닫이문을 설치할 때에는 벽면을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사용할 때 문의 움직임에 따라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벽면과 문에 설치하도록 한다.
- 현관의 중문은 (반)자동문을 설치하여 단열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자동문 설치의 안전을 위해 빠르게 열리고 천천히 닫히는 등 열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반자동문의 스위치는 문이 열리는 벽면 양쪽에 설치하여 손끼임을 방지한다.
- 반자동문 전방 1.0m 이내에 스위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통과 이전에 문을 열어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문의 스위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방향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 유아차, 자전거 등 이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시 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도록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 문을 열고 닫을 때 손 끼임 방지로 설계된 문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스톱퍼나 쿠션 제품 등 붙임식 손 보호대를 부착하도록 한다.



[지양]  
문과 문틀 사이에 공간이 생겨 손이  
낄 수 있는 구조



[권장]  
회전축을 이용하여 손이 끼지 않도록  
고안된 구조

### 문의 설치

- 외부와 연결되는 주출입문은 비나 눈, 흠을 털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할 경우 문이 걸리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설치하여 바닥면과 평탄하게 마감한다.
- 부득이 하게 문턱이 있는 경우 2cm 미만으로 계획하고 완만한 경사로를 두어 접근성을 높인다.
-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으로 하며, 출입문이 연속으로 설치된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 통과유효폭 0.9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 BF 최우수 : 통과유효폭 1.2m 이상, 전후면 유효거리 1.8m

### 시각적 대비

- 유리문을 설치할 경우 인지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턴·글자 등의 시각적 단서를 눈높이에 표시한다.
- 문이 주변의 벽과 유사한 색채나 재질로 설치된 경우 문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므로 대비되는 색채와 재질로 강조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문의 단면이나 모서리는 문의 앞뒷면의 색 등을 달리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투시창 및 채광창

- 실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시 바깥에서도 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투시창 설치 높이를 설정한다.
-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투시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 위쪽에 가로로 된 채광창을 설치하여 내부의 사람 움직임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쾌적한 수면환경 조성을 위해 투시창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할 수 있다.

### 문 손잡이

- 아동의 높이와 잡기 편한 크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의 손잡이를 선택한다.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문 손잡이의 형태는 손의 크기나 악력에 상관없이 열기 쉬운 레버형 혹은 일자형으로 설치하며, 세탁실이나 조리실 등 위생이 중요한 경우 누름식을 권장한다. 단, 노브형이나 매립형, 돌출형은 잡기 어려우므로 지양한다.
- 일자형 손잡이의 경우 잡기 편하도록 60cm 이상의 충분한 길이로 한다.

노브형	레버형	누름형	일자형
			
[지양] 모든 문에 지양	[권장] 실내 출입문, 직원관리공간 등에 적용	[권장] 정소관리공간, 조리실 등에 적용	[권장] 실내 출입문, 직원관리공간 등에 적용

### 안내표지 및 점자블록

- 건축물 주출입구의 30cm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Tip 유효폭

- 여닫이문 :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의 폭으로, 열린 문의 두께 미포함
- 미닫이문 :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된 폭
- 양여닫이문 : 주로 사용하는 한쪽 문만 열었을 때에 개방되는 폭

## 2.2. 창

- 자연채광과 경관 조망,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창문을 설치한다.
- 아동의 추락 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를 고려한다.

### 일반사항

- 자연환기 및 통풍이 잘 이루어지고, 자연채광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발코니, 중정, 천창, 고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을 계획한다.
- 실내에 유입되는 햇빛을 조절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 차양시설, 루버 등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외부 공간과 연결되는 창문 계획 시에는 정서적인 안정감에 도움이 되도록 자연에서 불어오는 꽃 향기나 피톤치드 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창은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쉽도록 하되, 아동의 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열리는 폭은 100mm 정도로 하고, 반드시 난간을 함께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한다.
-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높이는 창턱을 아동이 오르기 어려운 650mm 이상에는 바닥으로부터 1,200mm 이상 설치하고, 창턱이 650mm 이하로 낮으면 난간 턱으로부터 850mm 이상 높이로 난간을 설치한다.
- 여름철에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충망을 설치하고, 겨울철의 열 손실 방지와 소음 차단을 위해 2중 단열창을 사용한다.
- 창으로 떨어지는 물건이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물건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플랜트박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창의 형태별 특징 ]

형태	특징
측창	벽에 내는 창으로 한 벽면에만 창을 내게 되면 그림자가 검게 생기며 두 면 이상 창을 내면 빛이 분산되어 들어오므로 조도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난다. 자연채광, 자연환기, 조망, 탈출구의 역할을 한다.
고창	높은 곳에 있는 창일 수록 내부 천장을 밝게 하므로 실외에 나와 있는 듯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 빛이 눈부시지 않아 생활면에서 편리하지만, 청소와 관리에 불편한 점이 있다.
천창	지붕, 천장 면에 창을 내는 것으로 측창의 보완용으로 흔히 사용한다. 채광 면에서 측창의 3배의 효과를 내며 실내 깊숙이 빛이 들어와 측창보다 조도량이 크다. 단, 유지 관리와 통풍, 단열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 03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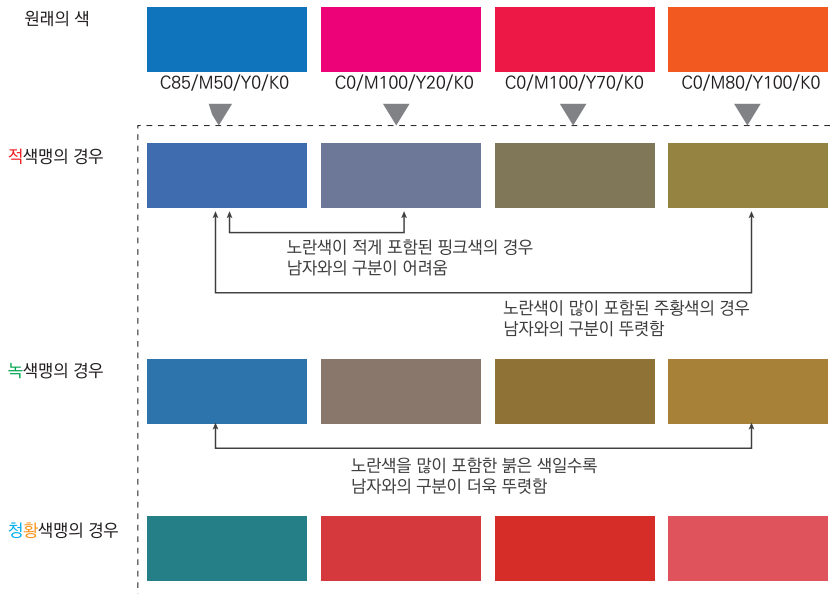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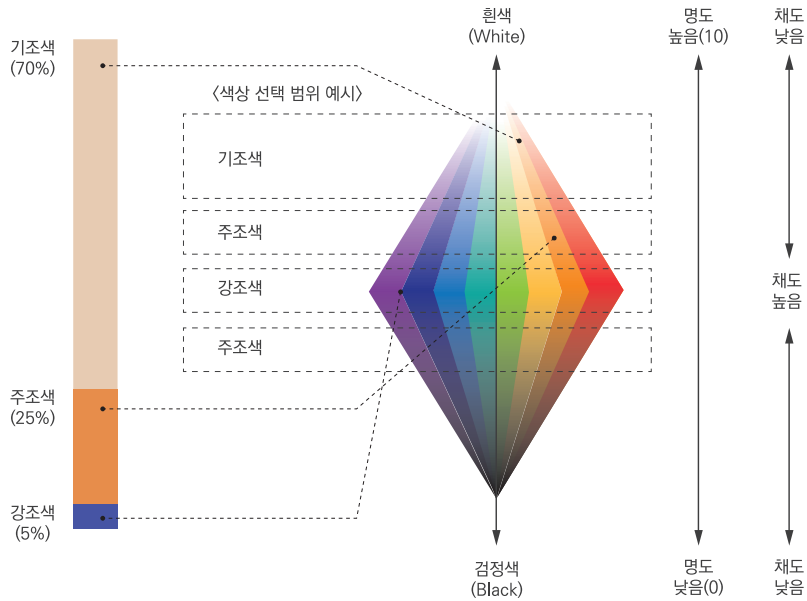
- 시설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 공간이 가진 기능과 위치에 적절한 색채조절을 한다.
- 색채의 심리적·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일반사항

- 시설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 공간이 가진 기능과 위치에 적합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예술성이 강조되거나 개인의 선입견이나 취향에 따라 건물, 설비, 집기 등의 색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상보다는 자연재료와 조화되는 색상을 선택하도록 한다.
- 전체 공간의 기능적 분류에 대응하여 조닝(zoning)과 그룹핑(grouping)하여 색채를 계획하고, 비품에 이르는 상세한 부분도 빠짐없이 실시한다.
- 색채계획은 공간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일차적인 기능과 이용자의 감성적 영역을 좌우하는 이차적 효과까지 고려한다.
-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생리적,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환경을 쾌적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색상이 제공하는 심리적 이미지, 온도감, 강약, 시간감 등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수도꼭지에서 붉은색은 따뜻한 물, 푸른색은 차가운 물로 인식하듯 색이 가진 통상적 인식과 새롭게 부여되는 질서를 통해 공간적 의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천장, 벽, 바닥과 같이 큰 영역을 먼저 결정하고 창틀, 가구, 액자 등 세밀한 부분을 결정한다.
- 기초색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심적인 색으로, 바닥, 벽, 천장 등의 마감재 색상이나 주요 가구 등의 색상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전반적으로 차갑지 않으며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 기초색은 따뜻한 계열의 색에서 명도가 7~9 정도로 높은 범위에서 선택하되, 채도는 강하지 않게 선택한다.
- 주조색은 각 공간의 테마가 되는 색으로, 공간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인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닥, 벽 등의 일부에 적용하거나 소파, 커튼 등의 패브릭, 가구 등의 색상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주조색은 기초색보다는 채도를 조금 더 높여 선명한 색상을 낼 수 있도록 선택하고, 명도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색으로 선택한다.
- 강조색은 공간의 포인트가 되어 주의를 끌고 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색으로,

선명하고 강한 색상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강조색은 채도가 높은 색을 선택하여 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선택한다.
- 기초색, 주조색, 강조색의 적절한 비율은 각각 70%, 25%, 5%로 하면 적당하다.
- 공간에 사용하는 재료의 표면 재질과 패턴 등을 고려하고, 유입되는 자연광과 조명에 빛의 형태와 양도 함께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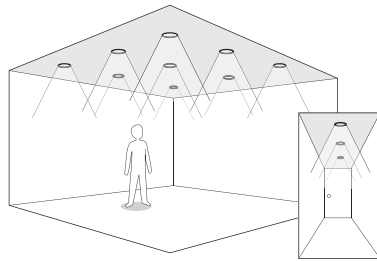
## 04 조명

### 4.1. 조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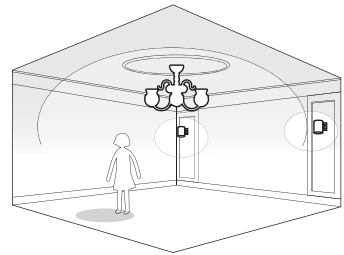
- 아동의 시력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조명을 계획한다.
- 자연 채광, 창, 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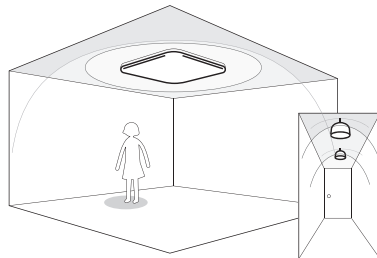
- 각 실의 목적에 맞는 조도를 적용한다.
- 시각에 의한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명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적정 조도 수준과 조명 방법, 조명기구 선택이나 배치를 결정한다.
- 하나의 조명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조명에서 간접조명, 전반조명과 국부조명 등 다양한 조명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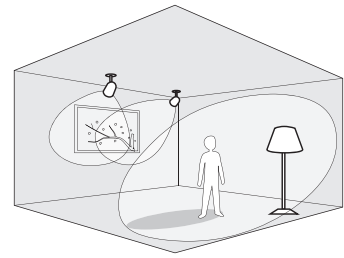
다운 라이트를 이용한 전반조명



상들리에를 이용한 전반조명



실링 라이트를 이용한 전반조명



스팟 라이트, 플로어 스탠드를 이용한 전반조명

- 긴 복도를 지닌 깊숙한 공간과 같이 자연채광 확보가 어렵고 인공조명이 주광원으로 활용되는 곳에는 국부조명을 함께 제공한다.
- 조도가 낮을 경우 공간의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워 길 찾기에 오류가 발생하고, 눈부심과 반사, 강한 그림자 등이 생길 경우에는 시각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명의 위치와 소재, 밝기를 선택한다.

-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조명계획을 검토한다.
- 건축물 내부 표면 마감의 시각적 대비는 조명계획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표면 마감과 조명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은 창문, 지붕창, 유리문, 유리벽, 조명기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계획한다.
- 창문과 조명은 복도 끝, 안내데스크 직원 뒤쪽 등은 그림자를 형성하여 이용자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용 위치로 지양한다.
- 동작감지센서는 이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 섬광 조명(Strobe light)은 뇌전증(간질) 환자의 발작을 유발하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대신 간접조명을 사용하여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
- 하향등(down light)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디퓨저(diffuser)를 사용하여 눈부심과 빛 반사를 최소화한다.
- 인공조명의 색온도(상관 색온도)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와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실의 용도에 따라 조명의 색은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전구색	특징	적용공간
전구색	색온도가 약 3000K로 주황색 계열의 따뜻한 느낌의 빛 안정된 분위기 연출, 비교적 어두운 느낌	휴게공간
주백색	색온도가 약 4000K로 태양광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빛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빛	생활공간
주광색	색온도가 약 6500K로 백색의 차가운 느낌의 빛 집중력 향상에 적합	공용공간, 사무실 등





## 자연채광과의 관계

- 실내로 유입된 자연광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 자연채광을 계획하여 외부환경과 연계하고 인공조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우수한 빛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한다.
- 단, 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열 손실, 열 획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광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창의 크기를 설정한다.
- 창호계획을 통해 기계 환기와 조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공조명의 자동 제어를 적용할 수 있다.

## 4.2. 세부공간별 조명계획

### 보육실

- 휴식과 놀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이므로 눈에 피로감이 없도록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 시각에 의한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명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수준, 조명방법, 조명기구 선택이나 배치를 결정한다. 하나의 조명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반조명, 국부조명, 작업조명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적절히 혼합 구성한다.
- 천장조명은 누웠을 때 눈부심이 없도록 램프가 노출되지 않는 등기구를 사용하거나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배치한다.
- 보육실 내 화장실 출입을 위해 자동 감지센서가 있는 발밑 조명을 설치하거나 침대 옆에 손닿기 쉬운 곳에 조명 스위치를 설치한다.

### 유희실

- 유희실은 기능이 다양하므로 조명기구 역시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유희실 중앙의 천장등을 전반조명으로 계획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매입등이나 벽부등, 스탠드, 플로어 스탠드, 그림이나 조각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한다.
- 창의 커튼 박스를 이용한 간접조명과 유희실의 우물천장등도 다목적 공간인 유희실에 유용하다.

### 식당

- 음식이 맛있어 보이도록 연색성을 배려한 전반조명을 선택한다.
- 식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식탁 위 700mm~900mm 정도 높이에 펜던트형 또는 할로겐 매입등의 국부조명을 설치한다.
- 식탁에서 식사 이외에 독서나 신문 읽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수준의 조도를 제공하는 보조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화장실**

- 세면대 거울 위에 벽부등을 부착하여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피부색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색온도가 높고, 연색성이 좋은 조명으로 계획한다.
- 스위치는 문밖 인접 벽에 설치하여 불을 켜 후 밝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자동 감지등이나 타이머 부착 조명을 설치하여 소등을 잊어버리는 경우에 대비한다.
- 모든 조명기구는 내수성 제품을 사용한다.

**복도**

- 전반조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며, 다른 공간과의 밝기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야간 이동을 위해 눈부심이 적은 상시 조명등을 설치하고, 벽면의 게시물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및 벽부등을 설치한다.
-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조명계획을 검토한다.

**계단**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직접 광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눈부심 현상이 생기지 않고 방향성이 강하지 않은 조명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며, 계단 디딤판과 벽면의 경계가 명료히 보이도록 발밑 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옥외조명**

- 야간의 보행, 산책, 휴식, 식사, 내부로부터의 전망, 방법 등 목적에 맞는 조명을 설치한다.
- 균일한 조명방식보다는 악센트조명을 이용해 강조하고 싶은 나무, 조각, 분수 등의 물체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원의 통로 조명은 보행로를 밝히는 것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램프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계단이나 경사가 심한 곳의 조명 설치에 유의한다.
- 스텝등(계단바닥에 매입하는 등)과 볼라드등(키가 작은 옥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야간 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 옥외공간의 조명은 방수 기능이 있고 기후, 온도, 오염에도 강한 것을 선택한다.

## 05 안내사인

### 일반사항

- 시설의 안내정보매체는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 다양한 성장단계의 아동의 입장에서 모두 인지하기 쉽고 지식의 정도에 관계없이 알기 쉽도록 픽토그램이나 그림을 활용한 사인시스템을 계획한다.
- 사인은 어떤 방향에서도 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하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한다.
- 모든 사인은 글자 숫자 등을 크고 알기 쉽도록 표기하고, 배경 색상과는 명확한 대비를 주어 인지하기 쉬워야 한다.
- 층별 주소색을 선정하여 사인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거나, 바닥이나 벽 마감재에도 적용하여 층별 공간의 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화장실은 층별로 같은 색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정보는 시각 정보매체뿐 아니라 특정 공간에 특정 소리, 향기, 촉감이 다른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청각, 후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마감재, 가구 및 설비 등을 통해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인지하는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 아동이 스스로 사인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흥미요소로서 사인을 계획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을 높이고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 계단실

- 계단실 참에는 층을 안내하는 사인을 설치하여 현재 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아래 방향 표시를 명확히 하면 층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조명계획과 함께 안내사인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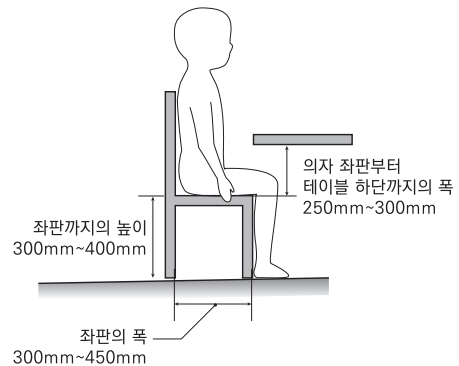
## 06 가구

### 일반사항

- 아동의 신장과 성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가구와 여유 있는 크기의 침구를 계획한다.
-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가구를 선택한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모서리에 충격을 방지하는 부드러운 재질의 마감재를 덧대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 가구, 비품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딪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목재 등 부드러운 재료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는 형상이 좋다.
- 청소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디자인과 재질을 적용한 가구를 선택한다.
- 낮은 가구는 아동이 발을 걸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아래 아동이 밟고 오를 수 있을 정도의 가구를 놓는 것은 지양한다.

### 책상과 의자

- 주 대상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신장, 근력과 균형감각, 활동성을 고려하여 의자의 형태, 크기, 등받이와 손잡이 유무 등을 선택한다.
-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의자는 넣고 빼기 쉽도록 가벼워야 하며, 넣고 뺄 때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나 홈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다.
- 아동을 고려한 의자 높이는 300mm ~ 400mm이며, 폭은 300~450mm가 적절하다. 영유아가 있을 시에는 높이 약 300mm, 폭 약 300mm의 유아용 의자를 별도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책상은 의자 상판에서 테이블 상판의 하단까지 250mm~300mm의 간격을 유지한다.
- 가구의 돌출 면이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가구를 선택한다. 기존 가구는 모서리에 충격방지용의 마감재를 덧대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 책상 등의 이동이나 배치의 변형이 잦은 공간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형태와 구조가 변형되는 가변식 또는 이동식 가구를 이용하여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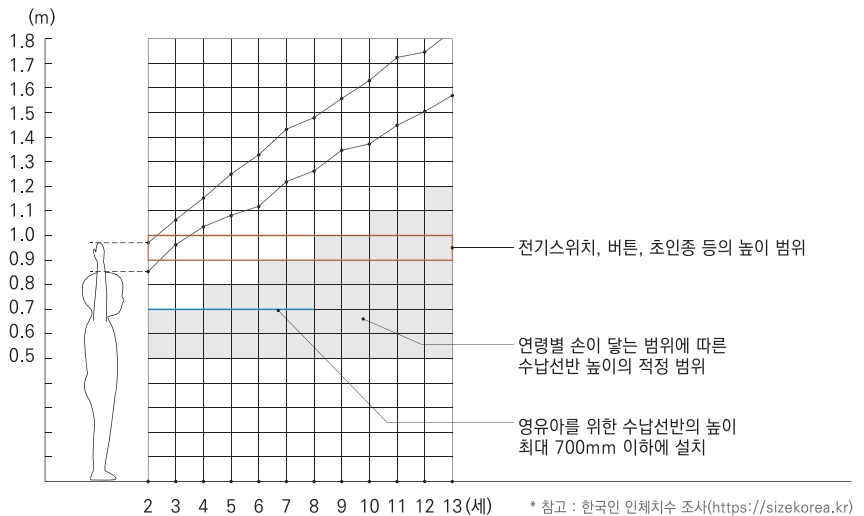


### 수납공간

- 수납공간은 상부장 또는 벽부장, 서랍, 선반 등 다양한 형태와 유형을 포함한다.
- 보육실에 아동 개개인별로 수납공간을 제공하여 개인 짐을 보관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 수납공간은 장애물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명확하게 인지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
- 장, 신발장 등의 문에 손이 끼지 않도록 천천히 닫히는 하드웨어가 장착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문 모서리에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질을 부착하여 손 끼임을 방지할 수 있다. 노출된 경첩에도 손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구 서랍의 경우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열 수 있도록 레일이 달린 서랍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빠르게 닫혀 손이 끼지 않도록 닫히는 속도가 조절되는 하드웨어가 장착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수납공간의 문 손잡이는 열고 닫기 쉬운 형상과 크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아동의 수납공간을 계획할 때에는 연령별 신체크기를 고려하여 시선이 닿아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손을 뻗어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수납선반의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 영유아를 위한 수납공간은 선반에 놓인 물건을 확인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선반의 높이를 700mm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10세까지는 선반 높이가 약 1,000mm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 수납공간의 문 손잡이는 손을 걸거나 끼울 수 있는 바형을 권장하며, 문에 매입된 형태나 구형으로 돌출된 형태는 잡기 어려우므로 지양한다.

[ 연령별아동신체치수 ]



**스위치,  
콘센트 등**

- 초인종(인터폰), 비상연락장치, 가구 손잡이, 스위치, 버튼 등은 손에 닿아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점을 바닥으로부터 800mm~1,200mm에 설치한다.
- 기계적 조작이나 안전을 위해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 | 점검 | Check

1. 공간별 법적기준 비교
2. 체크리스트

## 01 공간별 법적기준 비교

법적기준에는 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의무로 지정하고 있는 항목 중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되는 일부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법률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적용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BF 최우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최우수)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서울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1.1. 입지 및 규모

구분	영유아보육법
입지조건	<p>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p> <p>「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p> <p>「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p>
규모	<p>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p> <p>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p>



## 1.2. 매개시설

### [ 접근로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유효폭 및 활동공간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기울기 등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 (4.17%/2.39°) 이하
바닥 마감 (재질과 마감)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보행장애물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뒀개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뒀개를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설치장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 (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주차면수 확보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주차공간 (주차구역 크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 표시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보행안전통로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안내 및 유도표시 (유도 및 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 출입구(문)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차없이 수평접근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문의 형태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한다.
	미달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달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앞면 계속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유효폭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하고,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전면 유효거리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차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설치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경고블록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 1.3. 이동시설

#### [일반 출입문]

구분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단차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유효폭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전·후면 유효거리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문의 형태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점자 표시판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복도]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단차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바닥마감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보행장애물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속 손잡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뒷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굵기 3.2cm~3.8cm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성 확보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계단]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계단의 형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 앞면 계속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디딤판과 철편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계단에 철편 설치 철편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설치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철편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바닥마감 (재질과 마감)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 앞면 계속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 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점형블록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기타 설비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경사로]**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유효폭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 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활동공간 및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 휴식참 설치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 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바닥 마감 (재질과 마감)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손잡이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연속손잡이 2단 설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총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설치장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 활동공간	엘리베이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승강장바닥과 엘리베이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승강장바닥과 엘리베이터바닥의 틈은 3cm이하
크기	엘리베이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통과 유효폭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통과 유효폭 1.2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설치 높이 0.8m~1.2m
	엘리베이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성인 및 시각장애이용(1.5m, 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0.85m±5cm)로 구분하여 설치, 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총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총수를 안내함
		내부 세로 조작설비는 설치 높이 1.5m의 범위 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함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점자표시(고정식)
수평 손잡이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수평손잡이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수평 손잡이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각 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 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	각 층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기타시설	사람이나 물체가 엘리베이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되열림장치를 설치
	엘리베이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휠체어리프트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일반사항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활동공간

[ 보육실 ]

구분	영유아보육법	서울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 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보육실 면적 기준(영유아 1명당 2.64㎡) 산정 시 복도, 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제외 신축 리모델링 설계 단계부터 연령별 보육실 면적 기준 충족 고려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실]**

구분	영유아보육법
교사실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실 ]**

구분	영유아보육법
조리실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놀이터 ]**

구분	영유아보육법
규모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옥외 놀이터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옥내 놀이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앞면 계속)

구분	영유아보육법
옥내 놀이터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토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타설비 ]

구분	영유아보육법
기타 설비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유효폭		1.5m이상 통로폭 확보
단차		전혀 단차 없음
구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 1.5. 위생시설

###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설치장소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 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또는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 블록 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기타 설비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접근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유효폭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m이상 통로폭 확보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단차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전혀 단차 없음	
바닥 마감 (재질과 마감)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하여야 한다.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대변기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칸막이 출입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효폭 1.0m이상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자동문	
활동공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2.0m이상, 깊이2.1m이상 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 앞면 계속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형태(구조)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비데설치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손잡이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 만 설치할 수 있다.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기타 설비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 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 소변기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구 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손잡이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 [ 세면대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구조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손잡이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수도꼭지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광감지식 설치 또는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 표시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울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또는 전면 거울 설치	

## [ 욕실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구조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설치	

( 앞면 계속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영유아보육법
바닥 마감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기타 설비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샤워실 및 탈의실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한다.	
구조	출입문의 형태는 미달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이상
바닥 마감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기타 설비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호출벨 설치

## 1.6. 안내설비

### [ 안내판 ]

구분	BF 최우수
안내판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 [ 점자블록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크기 0.3m×0.3m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점자블록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 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설치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 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엘리베이터·화장 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앞면 계속)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구분	BF 최우수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그림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 1.7. 안전 및 대피시설

### [ 피난구 설치 ]

구분	BF 최우수	소방시설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영유아보육법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 앞면 계속 )

구분	BF 최우수	소방시설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영유아보육법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 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 설, 장비 등을 구비한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 우,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rlwnss에 따라 건물 전체에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과 보육 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 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 한다.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 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 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 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 야 하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해당 규칙 제9조를 참고한다.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 상조명등 설치		
피난의 구조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 약자 등이 주로 이용 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되어 있음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 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 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 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 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 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 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모든 층의 피난이 직 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 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경보 및 피난설비 ]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BF 최우수
시각·청각장애 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 [ 소방시설 ]

구분	소방시설법
소화설비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연면적 600㎡ 이상인 모든층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300㎡ 미만의 창살이 설치된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
	연면적 3천5백㎡ 이상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 시 설치
	노유자 생활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에 있는 노유자 생활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24시간 상시 근무 시 미설치 가능)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소화활동설비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제연설비 설치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 02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본문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사유
기본 방향	19p	아동이 집처럼 안식처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p	친숙하고 따뜻함을 주는 분위기로 디자인되어 있다.				
	20p	아동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보육단위로 구성하고 있다.				
	22p	소규모 보육단위의 중심부에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3p	인지발달의 기초인 움직임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				
	23p	다양한 감각적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24p	아동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				
	25p	아동이 기분, 상황,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5p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되어 있다.				
	26p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7p	일상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환경이다.				
28p	정원, 중정, 온실, 실외놀이터 등 다양한 옥외공간이 있다.					

(앞면 계속)

평가항목	본문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사유	
출입공간	건물 외관	34p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위치와 규모, 형태와 구조로 계획되어 있다.				
			외관 마감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로 자연친화성과 에너지 절감, 관리·보수·교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했다.				
			안전하고 기억에 남는 출입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행 접근로	36p	진입로는 보행로와 차도가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했다.				
			보도와 대지 경계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차 공간	39p	아동, 부모, 방문자, 교사 등 종사자, 배달 차량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과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제공되어 있다.				
	주출입구	42p	안전한 승·하차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출입구와 연결되도록 위치하고 있다.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				
			주출입구는 친숙하고 환영받는 분위기가 되도록 재료, 색채, 조명, 가구를 계획하였다.				
			주출입구는 실외에서 실내를 볼 수 있다.				
주출입구는 접근로와 주차구역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현관	47p	여러 명의 아동이 동시에 신발을 갈아 신고 수납하기에 편리하다.					
		우산, 유아차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 앞면 계속 )

평가항목		본 문	체크내용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사유
출입 공간	현관	47p	로비는 장난감, 수족관, 새장 등을 두어 아동의 관심을 유발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로비에는 잠시 앉아 기다리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보육 공간	보육실	50p	아동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공간 크기를 확보하고 있다.				
			일반 가정과 같은 형태의 소규모 보육단위로 계획되어 있다.				
			활동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활동영역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다.				
			아동의 신체사이즈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의자와 테이블이 있다.				
			교구 및 교재에 따라 적절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수납방식 (열린 수납과 닫힌 수납)의 수납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채광, 환기, 조망 등이 가능한 창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이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다.				
			혼자 있거나 휴식할 수 있는 개인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교사가 어디서나 보육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기저귀 가는 공간은 교사가 보육실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자세로 아동의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적합한 가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쓰레기통과 싱크, 수납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교사가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가구가 설치된 수유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교사의 개인 소지품이나 자료를 둘 수 있는 교사영역이 있다.							

( 앞면 계속 )

평가항목	본 문	체크내용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사유	
보육 공간	유희실	58p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설명회, 발표회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채광, 환기, 조망 등이 가능한 창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이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다.				
	놀이터	60p	자연을 경험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모험과 창의적 놀이가 가능한 자연적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실외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물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개방성이 있다.				
	식사실	64p	4명~5명 정도 소규모로 식사할 수 있도록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채광, 통풍, 온도, 습도조절이 잘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되어 있다.				
	관리 및 서비스 공간	교사실	66p	로비의 외부 방문객을 사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사의 사무작업이나 상담, 회의 등 업무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이 제공되어 있다.							
작업 및 휴식, 활동에 필요한 가구 및 설비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충분하다.					
기타 사무 공간		68p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사실과 연결된 회의실, 교구보관실, 휴게공간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별도의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실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 휴게실	68p	교사가 편히 휴식하고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앞면 계속 )

평가항목	본문	체크내용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사유
관리 및 서비스 공간	조리실	70p 조리실에서 식자재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을 설치하여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신체적 다양성과 최적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급식시설과 설비가 배치되어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 설치되어 있다.				
	세탁실	73p 세탁실은 관리 및 지원공간과 인접하고, 보육실과 분리하여 설치되어 있다.				
		세탁기와 건조 설비는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접하여 배치하고 있다.				
		설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동 공간	복도	74p 복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흥미로운 활동이나 만남, 휴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비상대피와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고려한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다.				
		각 실과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계획되어 있다.				
		비상시 경보시스템 및 사인정보물, 대피로와 대피공간 등은 누구나 알기 쉽게 되어 있다.				
		원활한 통행과 사고방지를 위해 단차, 돌출물, 모서리 등 물리적 장애물이 없다.				
계단	77p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안전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나의 계단에서 디딤판·철타의 치수가 동일하다.				
		계단에는 아동이 잡을 수 있는 높이에 손잡이(핸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따뜻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앞면 계속)

평가항목	본 문	체크내용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사유	
위생 공간	화장실	80p	아동 키 높이에 맞는 세면대, 변기, 소변기, 거울, 샤워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위생적 관리가 가능한 설비와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기와 소변기 주변에 여유공간이 있다.				
			교사가 보육실에서 화장실 안을 관찰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에 창이 설치되어 있다.				
			세면대 수전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온수 온도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미끄러지지 않고, 배수가 용이하며, 빛 반사가 없는 바닥재를 사용한다.				
			칫솔, 양치컵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타 물품수납공간이 있다.				





## 참여연구진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유니버설디자인팀	박병규

---

연구진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변혜령
	이사	이수진
	실장	박수연
	팀장	배윤희
	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선태

---

디자인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	안미령

---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2

---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 획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집 필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초판 발행
편집/디자인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ISBN	979-11-6599-579-9
가 격	비매품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Copyright©202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서울특별시